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586-10



2014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제 표권 (장애인등록, 생활안정)





201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장애인등록, 생활안정)

201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지역사회복지, 기타복지사업 등) 201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14년 장애이동가족지원 사업안내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1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이동수당 포함) 201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201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2014년 항당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1권]

[제][권]

[제III권] [제IV권] [제V권] [제VI권]

[제/ll권] [제/lll권]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 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Contents ▶▶▶ 201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1 제1장

1-1	2014년 주요 변경사항	3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7
1-3	장애인복지사업(촛괔표)2	20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 41 제2장

2-1 장애인등록 업무45
2-2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65
2-3 장애등급심사 업무7
2-4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88
〈관련서식〉
〈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참고자료〉129
[참고1] 장애등록심사 Q&A13
[참고2] 장애등급심사연혁175
[참고3]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174
[참고4]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175
[참고5]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176
[참고6] 장애유형별 등급기준183
[참고7] 장애등급심사규정184

제3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203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205
3-2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211
3-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21
3-4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238
3-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249
3-6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276
3-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83
3-8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290
3-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306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1-1 2014년 주요 변경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 1-1 2014년 주요 변경사항

업무명		2013년				2014년		변경사유
장애 검사비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수당 신 받아야	청 및 하는	의무재판정의	중증장애아동 으로 재진단을 애인 중 기초 층인 자	검사비 지원대상 확대(재판정도 지원 포함)
	〈신설〉			● 활동지원급 대한 교육			및 이용자에	이용자 교육 요구사항 반영
장애인활동 지원	〈신설〉			- ARS 결제 서비스저	네, 소급 공일:		외적인 결제는 이내에만 가능	예외결제 가능기간 기준마련
	〈신설〉			●활동지원기관 평가고시 반영				고시제정 후 사업지침 반영
	● 근로소득 공 - 인당 월 4 ● 기초급여(18 - '11,4월~	43만원	00원	 선정기준액 단독 680,000원, 부부 1,088,000원 근로소득 공제 인당 월 48만원 기초급여(18∼64세) '13.4월~'14.3월 : 96,800원 '14.4월~'15.3월 : 99,900원 (추후공지) 			00원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및 공제액
장애인연금	7	나 분	부가		구	분	부가	확대 기초급여 및
	フリテ	18~64세	60,000	717		18~64세	80,000	부가급여 인상
	기초 	65세 이상	150,000	기초	6	5세 이상	170,000	
		18~64세	50,000	차상위		18~64세	70,000	
		65세 이상	50,000		6	35세 이상	70,000	
	차상위	18~64세	_	차상위		18~64세	20,000	
	 	65세 이상	20,000	초과 65세 이상 40,00		40,000		
장애인자녀 학비		: 119,200원 : 36,000원 : 49,500원		■ 지원단가─ 교과서다─ 부교재나─ 학용품나	 : 1 : 3	125,900원 37,500원		국민기초 교육급여 지원단가 적용

업무명	2013년	2014년	변경사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출산여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2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 시 산모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지원대상: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임신기간 만 4개월 이상 태이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포함) -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이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 태아를 유산 · 사산한 자(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2012년~2013년 지원대상자 중 출산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증명서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상세화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월 지원액 1,016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96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월 보수 273천원, 연간 운영비 114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월 보수 1,000천원, 월 운영비 108천원 	 일반형 일자리 월 보수 1,089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10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월 보수 292천원 연간 운영비 152,4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월 보수 1,000천원, 월 운영비 108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월 보수 683천원, 월 운영비 105천원 	행정도우미 → 일반형 일자리로 확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신규 반영,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간당 최저임금 단다 반영
장애인보조 기구교부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2급 지체 • 뇌병변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교부품목 변경 (자세보조용구 삭제, 녹음 및 재생장치, 목욕의자 추가)

업무명	2013년	2014년	변경사유
	-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 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 용 보조기구 5종 : 뇌병변장애인, 근육 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 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 애인 1,2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2-60호)를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장애진단서의 '진단 의사 소견'란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에는 『주차가능』 표지발급 가능	●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2-60호)를 적용함	예외규정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및 부당 발급 우려 제기
24 28	●한 가구당 1장의 자동차 표지 발급	● 한 가구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자동차가 2대인 경우 보행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운영상 불합리한 점 개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가구당 지원 기준단가는 3,800천원으로 함	● 가구당 지원 기준단가는 3,800천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가감할 수 있음. 가구별 지원금액은 기준 금액의 50%~150% 범위로 함	개조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효율성 도모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 배차원 : 이용자의 예약접수 및 치량배 차 전반에 관한 사항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 상담원 : 이용장애인의 차량이용관련 상담 및 복지서비스 상담, 연계,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배차원의직명및주 요업무변경
장애 심 부름 센터 운영	● 보수는	● <u>보수는</u> 	보수기준표조정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인력은 지역센터별로 개소당 센터장 1인과 전문요원 3인을 포함한 4인	 인력은 지역센터별로 개소당 센터장 1인과 전문요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인력에 탄력성 부여
발달재활 서비스	● 서비스 단가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별로 적정 단가 설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제공기 관의 단가를 공고	● 서비스 단가기준 - 서비스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공개 주체별로 서비스단가를 공개하여 야 하는 소관 제공기관 규정	제도 개선

업무명	2013년	2014년	변경사유
	● 서비스 제공인력 - 국가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 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소정 요건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 하는 자	
언어발달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 만 18세 미만 - 부모 : 양쪽 부모가 시각ㆍ청각 등 등 록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및 심리상담서비스 - 언어치료ㆍ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 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 제공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 학습지도사, 놀이지도사, 수화통역사, 심리상담사, 보육교사,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등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대상자 선정기준 연령: 만 10세 미만 부모: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 등 등록 장애인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제공인력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제도 개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지원시간 - 장애이동 1인당 연320시간 범위내 지원	● 지원시간 - 장애이동 1인당 연480시간 범위내 지원	급여 확대

─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1985~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 10. 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5. 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0. 9.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 5. 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KAL 국내선 항공료 50%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1. 8. 6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 • 운영
- 1992. 9. 3~14: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 → 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
            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할인 확대 (KAL → 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CC이하 → 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 10점)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1. 1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
```

→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 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53종 → 54종: 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 69종) 및 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함 2000cc이 함의 수용기도가 1대)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 「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 제333호)

- 1996. 8. 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13, 은2, 동15, 종합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 · 운영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 저시력보

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 → 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

재활병 • 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 7. 13~26: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29: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 · 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보고 회의 개최 (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배우자·부모 명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휘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 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 704호)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 배기량제한 폐지)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 1. 1.부터 시행)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관련 고시 제정
- 2000. 4.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 제도 시행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 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0~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설치·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 11.1~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복 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 \rightarrow 17개품목, 우선구매비율 $2\sim20\%$ \rightarrow $5\sim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7~10인승 승용차 추가)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수립
- 2005. 6. 30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6. 7. 1.부터 신축되는 의원· 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 10. 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 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제 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 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 20~80시간)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8341호)('08 4 11시행)
- 2007. 4. 11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공포(법률 제8367호)('07. 10. 12시행)
- 2007. 10. 1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20323호)
- 2007. 10. 17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공포(법률 제8652호)('08.4.18시행)
- 2007. 12. 2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공포·시행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30~90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인상 7,000원→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20,000명)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8852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개정(대통령령 제20679호)
- 2008. 3. 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1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3. 2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8974호)
- 2008. 3. 2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법률 제8945호)

- 2008.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0766호)('08.4.11시행)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9. 2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1026호)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 40~100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25,000명)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 ('09.7.~'10. 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1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별표1 장애등급표 개정)
- 2009. 12. 17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 제정
- 2009. 12. 2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2009. 12. 17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 개정
- 2009. 12. 2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별표1 장애등급표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2호)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 (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9호)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 확대 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70% →100% 이하)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 제정 (2010. 7. 1 시행)
- 2010. 5. 1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0280호)(2010. 5 .11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010. 7. 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 ('10.9.~ '11. 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0. 12. 30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개정(고시 2010-140)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 2만원 지급)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 18개 품목별로 5~20% → 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의 1%)
- 2011. 1. 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10426호) (2011. 10.5 시행)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령 제41호): 특수학교,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 콜택시 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공포 (법률 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2013.3.시행)

- 2011. 4. 1 : 장애인연금팀 신설

장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대통령령 제22926호)(2011.5.19시행)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 스 제공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3049호) (2011. 10.5 시행)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공포 (2012. 8. 5 시행)

- 2011. 8. 1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7호) (2011. 10.5 시행)

- 2011. 9.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보건복지령 제79호)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8. 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대통령령 제24061호)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1 . 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실시 기준 완화

-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1 연금·수당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1-1. 장애인연금 (1~3급 중복)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4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680,000원부부가구: 1,088,000원	기초 차상위 차상위 초과	= 기초급C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18~64세 65세 이상 18~64세 65세 이상 의 상황에 따 있음	74 176,800 170,000 166,800 70,000 116,800 40,000	(매월, 기초 96,800 96,800 96,800	170,000 70,000 70,000 20,000 40,000	읍•면•동에 신청
1-2.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이동수당	●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이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이동 *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기리 - 보강 - 장애 - 기리 - 기리 - 보강	수 있음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2만원 - 장애이동수당 - 기초중증: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중증: 1인당 월 2만원				읍 - 면 - 동에 신청

2 보육·교육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 39만4천원/월 - 방과후: 19만7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이보육: 41만4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 •면 •동에 신청
2-2.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3급)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9.500원(연1회)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2,600원 (1학기 26,300원, 2학기 26,300원으로 연2회) 	읍 - 면 - 동에 신청
2-3.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하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기족 등	제공기관에 신청

③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	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3-1. 장애(의료!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3-2. 건 강 보험 지역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전액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 1~2급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 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3-4.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 • 면 • 동에 신청
3-5.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 - 면 - 동에 신청
3-6.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 • 면 • 동에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 1~2급 지체・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상장치: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 앙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 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 장애인 1, 2급	읍 • 면 • 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3-8.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 건강보험: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 : 점범위내에서 구입비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2기준액고시액실로 낮은금액의 80% ● 의료급여수급권자 : 기준액 범위 내에서 (2종)를 기금에서 보접 무료	용의 80%를 스쿠터자세보 구입가액 중 를 공단이 5 적용 대상 너 전부(1종) 부담	· 공단에서 · 조용구는 부담 품목의 또는 85%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의료급여: - 시•군(* 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 iN참조)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등급 1∼3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출산(유산, 사산포함 1백만원 지급	함) 태아 1인	기준	읍·면·동에 신청

4 서비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 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 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 원 등급 최종 결정	- 합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등급별 월 41~101만원 - 추기급여: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8.6 ~2,341천원 추기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 면제 - 차상위: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 ~15% + 추기급여의 2~5% 처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 24.6~94.5천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기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1,7~117천원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이동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이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 • 면 •동에 신청
4-3.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기준단가 : 3,800천원 *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 단가의 50%∼150% 까지 가감할 수 있음	읍 • 면 •동에 신청
4-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시•군•구에 상담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4-5.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 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 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4-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下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지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4-7.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지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수 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 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 1688-459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4-8.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 02-2142- 4442,4445)
	●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 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02-2142- 4442,4445)
4-10.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11.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 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132 www.klac.or.kr)

5 일자리 융자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 → 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구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의반형 일자리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 인요양보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행주차단속, 환경도위미, 보육도위미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전문 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월 56 시간 주5일 40 시간 주5일 25 시간	/ 년간 부대경비 152,4천원 월 보수 1,089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10천원 월 보수 1,000천원 /월 운영비 108천원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시·도당 1개소 (16개 지역)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3%(고정금리)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 • 면 • 동에 신청
5-7.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대여한도: 가구당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대여이자: 3%(고정금리) 상환방법: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읍 • 면 • 동에 신청

6 공공요금 관련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정(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신청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 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 •면 •동 자치센터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6-8.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2 02-6096- 2044)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경치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 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 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 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 • 면 • 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 • 면 • 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6-11.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6-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6-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50% - 경증장애인(4급~6급):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6-14. 영화관 관람료 할인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 (정부 3.0과제)

7 세제해택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 · 군 · 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7-5.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 · 비속, 형제 ·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7-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7-8.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26)	
7-9.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 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 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 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 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 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7-1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기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고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 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 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7-11.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 착추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7-1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7-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8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8-1. 주간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8–2.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 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8-6.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 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 • 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
8-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8-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 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 실비 ●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 센터에 신청 문의: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8-9.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청각 • 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 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신청 문의 : 한국 농아인협회 ☎02-461- 2261~2
8-10.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 02-3472- 3556) www.free get.net
8-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문의: (사)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2 02-592- 5023) www.kaidd.or.kr
8-12.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 - 도지사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8-13. 시각보조 시설 중앙 지원센터운영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주요업무 기능 - 시각보조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보조시설 설치 실태조사 -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 02-6925- 1137~8)
8-14.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도 협회 및 시·군·구지회	●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지체장애인 협회 (☎ 02-2289- 4343)
8-15.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 - 면 - 동에 신청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2-1 장애인등록 업무

2-2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2-3 장애등급심사 업무

2-4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관련서식〉

〈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참고자료〉

[참고1] 장애등록심사 Q&A

[참고2] 장애등급심사연혁

[참고3]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

[참고4]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참고5]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

[참고6]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참고7] 장애등급심사규정

- 2-1 장애인등록 업무

및 목 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또는 행정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2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③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u>구비서류 안내</u>	시・군・구(읍・면・동)
↓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u>의료기관</u>
4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u> </u>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군·귀(읍·면·동)
↓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u> </u>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귀(읍•면•동)
<u> </u>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귀(읍•면•동)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 - 군 - 구(읍 - 면 - 동)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함)』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u>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u>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함.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장애심사서류 완화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구비서류안내문」 을 출력하여 교부함.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지사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함.
 - 신청인이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 연금 장애심사자료(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별지 제1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제한됨.(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음)
 - ※ 행복e음의 '국가유공자정보열람'을 통해 이중등록여부 확인필요

(2)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장애등급심사가 결정·통보되고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 및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에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을 안내
- ▶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 후 장애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 및 각종 조세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 (참고 5 국민연금공단 지사현황)
- 기본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의뢰 전에 해당 장애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여 자료제출을 받아야 함. 신청인은 자료보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기본구비 서류를 갖춘 후 공단으로 심사의뢰하여야 하며, 기본구비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는 심사 의뢰가 반송될 수 있음
- 담당자는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함.
-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진단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단, 진단비용 지원대 상자의 경우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공단 자문의사에게 직접진단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건강보험자료 활용 및 진료기록지의 직접 확보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서식 7-1>」,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서식 7-2>」, 인감증명서 <u>등을</u> 제출하여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 심사처리기간은 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단 심사부서 접수일로부터 21일 소요됨. 다만,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심사결정 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등록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3) 장애등급심사 요청

- 장애인등록 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서류이송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산 송신으로 심사의뢰 함.
-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된 허위장애 확인의 경우에는 현 시점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진단을 받은 당시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공단이 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유형 및 사유로 심사의뢰
 - 심사유형 : 직권재판정 / 심사사유 : 기타(허위부정등록 확인)

- 필요한 경우「장애등급 심사요청서」하단의 특이사항(메모)란을 활용함.
 - 구비서류 송부 시 진료이력이 없어 더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더 보완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가 없음을 명시(추후 자료 보완을 줄일 수 있으며 송부한 자료로 최대한 심사 가능하도록 협조)
 - 두 개 이상의 장애 중 하나의 장애만 심사대상인 경우 심사대상, 사유를 명시
- 공단 지사로 구비서류 송부 시 장애진단서는 스캔 저장 후 원본은 지 자체가 보관하고 장애진단서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확인)과 기타 구 비서류를 송부함.
 - 진료기록지 원본 또는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송부 여부는 담당자 가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X-RAY, CD영상자료, 안저사진(시각장애) 및 안면사진 등 사진의 경우는 원본을 송부함.

<장애등급심사 서류처리방안>

- ※ 공단은 시·군·구(읍·면·동)에서 공단으로 송부한 일체의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공단의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며, 원본은 심사를 마친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해당 시·군·구(읍·면·동)에 반환함.
- 민원인이 서류반환 요구시 지자체는 <서식 10>장애등급심사 서류반 환요청서를 제출받아 민원인에게 직접교부 또는 우편배송 실시
 - * 단, 장애진단서는 행정기관에서 원본 보관함
- 장애진단서 사본발급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임을 확인 하여 붙임<서식 8>장애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를 받은 후 원본대조 필을 하여 발급할 수 있음.
- 현, 장애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을 기재할 수 없음. 다만,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장애등급과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여 결정된 장애등급이 상이한 경우는 장애등급 결정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음.
- <u>그 외 장애심사 관련 구비서류의 보관 및 폐기는 기록물관리기관(읍.</u> 면.동)의 장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결정.실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발간 「2014 기록물 관리지침」참고

〈신청유형 구분〉

- 1. 신 규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하는 경우,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2. 재판정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재판정시기 지정 및 의무재판정)
- 3. 직권재판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 4. 서비스재판정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 스를 신청하는 경우
- 5. 조 정 등록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조정신청 하는 경우 (단일장애의 등급상향)
- 6. 이의신청(기존 :재청구)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4)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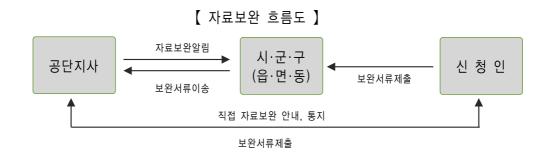
가. 자료보완

- 기본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함(처음 상담 시 구비서류 안내문에 따라 충분한 상담 필요)
- 공단은 심사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로 최대한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 (읍·면·동)에 보완내역을 알리고,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자료를 요구함
-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하여 시·군·구 (읍·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진료기록 직접확보서비스" 제공을 요청 하면 지사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진료기록 직접확보서비스가 가능한 범위〉

- 환자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MRI 등 방사선사진 및 판독지 등
- ※ 직접확보는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함.
- ※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은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보완하도록 안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제출함. 다만,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보완서류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1회(15일) 연장할 수 있음.
- 자료보완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보완자료 제출 시에는 '행복e음'의 '장애등급심사이력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신청화면 호출하여 진행단계를 '보완자료제출'로 선택하여 신청하고 보완자료는 공단지사로 송부함.



나. 직접진단

-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장애심사 서류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단의 자문의사가 장애인을 직접진단하도록 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직접진단이 결정되면 공단 지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진단 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신청인 및 자문의사와 협의 하여 직접진단 심사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한 후 심사대상자와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그 결정된 사항을 통지함.
- 직접진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직접진단을 시행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일정 등으로 15일 이내에 직접진단이 어려운 경우 직 접진단 기한을 1회(15일) 연장할 수 있음.

○ 직접진단 심사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직접진단 흐름도】



다. 반려요청

- 신청인이 심사 도중에 장애인등록(또는 등급조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취소하여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반려를 요청할 수 있음.
- 공단에서는 심사반려를 요청받으면 진행상태 확인 후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전산송신으로 심사반려함.
- 반려여부 확인은 등급심사진행상태 상세조회 정보란의 진행상태에서 '반려통보'를 확인한 후 정보를 선택하여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됨.

(5)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 장애인등록일(등급조정일) : 장애등급결정일
- 심사완료 확인 및 장애인등록
 - <u>공단에서 장애심사 결정내용 통보 시 심사소견, 장애등급, 재판정대상</u>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복e음에 적기 반영

☞ 방법

- ▷ '행복e음'의 진단내역 등록에서 '등급심사 수신결과조회' 버튼을 클릭하여심사완료를 확인
 - 심사대상자 1인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심사된 경우 각각 심 사완료를 확인하며, 두 가지 장애 모두 통보받은 후 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 결정
- ※ <u>한 가지 장애를 심사요청했으나 사실 상 중복장애에 해당하여 공단에서 분할하여 심사하면</u> <u>각각 심사결과가 통지됨에 유의 (이 경우 심사번호가 각각 부여되었음을 행복e음에서</u> <u>확인할 수 있음)</u>
- ▷ '장애등록심사 대상자 조회'에서 심사결과 등록 후 '진단내역 등록'으로이동하여 진단내역 등록결과 확인
 - 장애심사 결정 사항 중 심사대상자의 중복장애(기존 등록장애 포함) 중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장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안내를 확인
 - ※ 심사결과등록을 완료하여야 진단내역에 반영되며 심사결과등록을 완료하기 전에는 '진단내역 등록'에서는 진행 중으로 조회됨.

○ 중복장애 합산판정

-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 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중복장애의 합산" 규정에 따라 그 중 가장 장애등급이 높은 두가지 장애를 중복합산하여 최종 장애 등급을 결정함
- 시·군·구(읍·면·동)에서 두 개 이상의 중복장애를 심사의뢰한 경우에 공단은 장애 종류별로 각각 "장애심사결정서"를 통보
- 시·군·구(읍·면·동)에서 하나의 장애로 심사의뢰한 경우에도 사실 상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 해당하면 공단은 유형별로 분 할하여 심사하며, "장애심사결정서"를 각각 통보

-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중복조정에 관한 안내"란에 기재된 장애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두가지 장애를 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결정
- ※ 행복e음 시스템내 장애인복지카드 관리 철저
 - 장애등급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행복e음 처리
 - 장애등급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정확히 확인하여 행복e음 처리 및 기존 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포함) 회수 . 재발급 실시
 - 장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신용 및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복지카드 포함) 회수 및 폐기

(6)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행복e음'의 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장애등급결정서」를 첨부
- <u>※ 별지 제1호서식「장애등급결정서」중 중복합산 결정내용은 반드시 심사결과외 다른 장애와 중복</u>합산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장애등급결정서의 재판정시기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여 안내

(7)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필요한 경우 공 단지사 협조요청)하고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하여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 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함.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u>90일 이내에는</u>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 (단,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

- 재판정 심사결과 등급 외,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으면 당해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존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을 취소 처리함.
 - 다만, 재판정 심사결과 결정보류되거나 등급조정, 장애인연금, 장애인활 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여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 받은 경우는 기존장애유형(등급)을 유지
 - ※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 결정보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확인불가: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심사반려 : 보완자료 요청 등에 장기간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공문을 통지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공문 통지일자를 기준으로 2주간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본인에게 통지함(등록취소에 대한 사전통지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
- ※ 단, 장애등급 심사결과 등급하락(등급외 포함)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 향후 이의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을 복원하고 원 처분 결정일자로 소급하여 장애인등록 함.

➡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2주간의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 반환통보서 등의 절차 진행

【 장애인등록 취소절차 흐름도 】

공문통지(취소사전통지)

반환통보

반환기일

| ----- 2주(의견청취) ---- | ---- 2주(등록증반환) ---- |

심사결정통지

장애인등록취소

※ 사망한 자의 장애등록 취소 : 실제 사망일의 다음날로 취소 처리함.

4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1) 장애등급의 조정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인복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따라 장애등 급의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함.
- 장애등급 조정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 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 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심사요청,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함.
- 장애등급조정일: 장애등급결정일(등급조정 및 재판정자는 심사결과 통보 전까지는 기존장애등급으로 장애인증명서, 자동차표지발급 및 등록장 애인으로 인정함)
- 조정신청을 취소하거나 서류보완 불응 등으로 심사반려 된 경우, 확인 불가, 결정보류로 심사결과가 통보된 경우 기존에 등록된 장애유형(등급)을 인정할 수 있음.

(2)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 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조하여 장애 재판정 철저히 이행
 - 2011.4.1일 이후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한 건은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정 필요성과 시기를 결정한 사항이므로 별 도로 재판정 시기 등를 고려할 필요없음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 O 행복e음 시스템내 재진단 기한 입력 철저
- (지적사항) 재판정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재진단 기한일을 누락한 경우
- (조치사항) 2011.4.1일 이전 신규 및 재판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 재판정 필요 여부 검토 후 행복e음 시스템에 재진단 기한일 입력
- 재판정 미이행시 장애인 등록 취소 등 사후관리 철저
- (지적사항) 재진단 기간내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 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조치사항) 재판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재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장애 재 판정 촉구 및 등록 취소 절차 이행
- ▶ 재판정 미이행시 장애인연금. 수당 등이 부당하게 집행되므로 관리 요망
- (장기이식여부 확인)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이후 매 1년마다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안과장애 등의 신장, 심장, 간, 폐, 각막 등의 이식여부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아 대상자에게 장 애등급이 조정됨을 통보함(이 때 2주간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견기한 제출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 으로 장애등급을 조정함)

- 신장, 심장, 간, 폐이식의 경우 5급으로 등급조정
- ※ 이식에도 불구하고 상태악화를 주장하는 경우는 장애등급심사를 시행
- 시각장애1~6급 장애인이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는 각막이식 수술 후 1년 경과시점을 재진단 기한으로 입력하고, 재판정통보(등급조정)시행
- (장기이식자의 조정신청) 장애인 본인이 장기이식수술 시행 후 장애 등급 조정신청을 원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장애등급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등급조정함.
- (재판정 통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되, 재판정관련 서류구비 등을 위하여 대상자가 재판정 기한일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받도록 하여 소정기일내 장애진단을 받도록 함.
 - 다만,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유예 가능함.
 - 재판정을 유예한 경우는 행복e음 시스템 재진단 기한일을 유예한 날 까지로 조정하여 적정한 장애 등록이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재판정기한 유예 예시〉

- 뇌병변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재판정시기에 뇌출혈 등이 재발생 하여 입원치료 중인 경우 재판정기한 6개월 유예
- 호흡기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 입원치료력이 없다가 재판정시기에 악화되어 입원치료 중인 경우 재판정기한 유예 다만, 만성호흡기질환,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 중인 경우는 재판정을 시행하여 적정한 장애등급을 유지하도록 함.
- 의무적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치료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한경우(정신장애, 간질장애) 치료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유예가능

- (재판정 촉구) 장애인이 지정된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함.
- (장애인등록 취소)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 아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를 명기)을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 여 의견 청취를 받음.
 -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 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고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함.
-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2주간의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등급외 또는 확인불가, 반려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 (결정보류, 등급조정,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제외)될 경우 행복e음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처리하고, 민원에게 장애인 등록 사전통지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반환토록 하며, 반환하지 않을 시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함을 안내

【 재판정 및 불응시 등록취소 절차 흐름도 】



- 재판정대상자가 판정기준미달 등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오지 못하는 경우
 - <서식 4>의 장애인등록 취소원을 작성하여 장애인등록을 취소함
 - 장애등록취소원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위의 취소절차에 따름
- 의무적 재판정 도입년도
 - 정신장애 : 2000년 도입 장루 · 요루장애 : 2003년 도입
 - 간질장애 : 2003년 도입 심장장애 : 2000년 도입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평형장애, 신장장애, 호흡기, 간장애 : 2010년 도입
 - ※ 행복e음을 통해 추출된 재판정시기 도래자라 할지라도 재판정 필요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출된 대상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한 의무적 재판정 대상인지, 진단서에 재판정시기가명시된 대상인지 확인 한 후 재판정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시기 〉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지체(척수) 장애	지체장애 중 척수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 <u>척수장에는 장애잔단서 내용 확인 필요</u>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 장애	왜소증(만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u>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u> <u>정하여 재판정</u>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평형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신장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장루 -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u>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u>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간질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u>심장장애</u>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가,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신청장애인
 -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 재판정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2)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1인당 지원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 3)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 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서발급비용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서 진단서발급비용 전액을 청구하도록 함.
- 4)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 (의료기관 청구)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 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함.(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시 · 군 · 구청장은 청구명세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급함

- (기초생활 수급자 직접청구)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 기관에서 지원받지 않고 읍 · 면 · 동(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지급방법 : 시 · 군 · 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조치
 - 구비서류: <서식5> 장애인등록진단비(검사비) 신청서 1부, 영수증

나.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u>의무재판정</u> 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 지원가능
- ※ 단. 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2) 지원액

〈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

1. 장애인연금 및 활동 지원 중증 장애이동 수당신청 및 <u>의</u> 무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지급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차상위 계층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 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5만원 지급
2.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자		1)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환대상자(ex,장애세부유형확인이 필요한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 시행하는 경우 -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진단시기에 재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현재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의미함

- 3) 지급방법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 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
- 다. '장애등급결정서' 출력 시 첨부되는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안내문'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6 기타 행정사항

가. 장애인등록 정보의 전산입력

-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장애등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행복e음에 입력함.

나.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관리 철저

- 읍 · 면 · 동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의 사망, 전출입, 서비스 제공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산 정리를 시행함
- 시 · 군 · 구 장애인복지담당은 읍·면·동에서 변경 처리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확인 방법은 읍-면-동의 보고 확인, 출장 확인 등
- 시 · 도 장애인복지담당은 시 · 군 · 구에서 작성한 장부를 확인하거나 읍 · 면 · 동에 직접 확인하는 등 등록장애인의 전산 관리를 점검함.

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위임장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 하여 6개월

- <u>다만</u>,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 법 정대리인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음.
 - ※ 위임장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신청절차 : 전국 시 · 군 · 구 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 사진 1매(6개월 이내의 2.5cm×3cm 증명사진)
 - ※ 주민등록법에 의한 사진을 활용할 수 있음
- 처리기간: 즉시(수수료: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 · 군 · 구 민원실(장애인담당부서) 또는 읍 · 면 · 동의 전산망에서 출력하여 사용

※ 사망장애인의 증명서발급

- 사망한 장애인의 가족이 연말정산 등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때 신청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사망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에 수기로 사망자임을 기재)

※ 허위등록이 확인된 경우의 증명서 발급

- 허위 장애등록으로 확인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없음
- 단, 허위 장애로 등록된 장애유형외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장애인등록 진단내역 등록시 유효장애 2개 이상 입력가능

- ▶ 유효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장애 (주장애1, 부장애1, 2 등으로 입력)
- ▶ 이력장애 : 장애인등록사항이 아닌 장애(장애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상태가 호전 되어 장애등록사항이 아니게 된 경우 등)
 - 중복합산은 주된장애(주장애1)와 차상위장애(부장애1, 2중 선택)의 2개의 장애로만 합산 판정

라. 장애인등록 취소신청에 관한 사항

- 등록장애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 취소원<서식 4> 1부, 복지카드
- 처리방법: 담당공무원은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에게 재확인을 거쳐 신청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취소처리를 한다.

마. 국고보조금의 교부 신청

- 시 · 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6>을 1월 31일까지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홍보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의 필요성, 등록시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 등록을 유도하며,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 · 추진하여야 함.

- 2-2 외국인 및 제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주요 내용 안내

-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외국인 등)도 장애인등록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 (운영방식) 내국인과 동일한 내용 및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며,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서면심사 (국민연금공단)를 실시합니다.

〈자격 확인관련 주의사항〉

- ※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가진 외국인 등이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새올시스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등록 업무를 시작하여야 함.
-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담당부서에〈별지 제1호서식〉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권한 승인 요청 필요
-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장애인 등록" 민원사무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재외국민의 경우 "새올시스템"에서 자격유무 확인이 불가하므로 외교부에서 발행한 「재외국민 등록 부등본」과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자격 확인 후 등록절차 진행
- (읍면동 담당자 업무사항)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장애심사자료를(장애진단서, 장애상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 장애심사자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으로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지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다음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진료기간 확인없이 외국의 수술 또는 진료기록지 확인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므로, 장애진단서와 수술기록지 등(번역 공증본과 원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 0 지체(절단)장애
- O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양측 다리 길이 차이(5cm)
- O 지체(척추)장애 : 척추고정술 O 뇌병변장애 : 선천성 뇌성마비
- O 시각장애: 안구적출
- 0 각종 이식의 경우 : 신장, 심장, 폐, 간 이식
- O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 1.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 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 2. 검사결과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 3. 진료기록지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 주요 진료 기록지: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는 경과기록지 등, 입원 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
- ※ 구체적인 소견과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지를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심사 서류제출 관련 주의사항>

※ 자료보완 요청 등을 위하여 연락처 확인하여야 하며, 연락 곤란시는 장애 등록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및 목 적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외국인 등')도 장애 인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 및 읍ㆍ면ㆍ동(또는 행정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2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장애등록 허용 자격: 재외국민, F-4, F-5, F-6(F-2, F-2중 결혼이민자만 포함)

	구 분	정 의	확인 자료
재 한	한국영주권자 (F-5)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증
외국인	결혼이민자 (F-6, F-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증, 기타 혼인증빙서류
외국국적동포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5 재 /(도-4)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국내거소신고증, 사증
포	재외국민 (국적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국내 거소신고증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 참조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 장애인 등록 관할 읍·면·동은 체류지 또는 거소지의 읍면동임
- ※ 외국인 등의 경우도 장애인 등록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 외 등록 신청이 불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함)』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 장애등록 신청 관할 읍·면·동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 · 면 · 동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 · 면 · 동
-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 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다만,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필수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하여야 함.

(2)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 장애유형별로 필수 서류(외국 진료기록 인정 요청시는 번역 공증본과 원본을 함께 제출)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공단지사로 송부
 - 공단 검토 후 추가적으로 자료보완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 외국인 등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의 제출 또는 언어장애 인정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공단 내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로 문의
- 장애인복지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안내함.
 - * 필요한 경우「장애진단의뢰서」발급 가능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의뢰는「장애등급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예를 들면 시 유발전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장애심사서류 완화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교부함.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도록 함.
- 심사처리기간은 심사접수일로부터 21일 소요됨. 다만, 공증 자료에 대한 확인,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3) 장애등급심사 요청

※ 국내인과 관련 절차 동일

(4)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 ※ 국내인과 관련 절차 동일
 - 외국인 등에도 직접진단. 직접확보서비스 등을 동일하게 지원

(5)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 국내인과 관련 절차 동일

(6)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 장애심사결과 통지시 외국인 등의 경우 6개월마다 자격사항을 확인하여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행복e음'의 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장애등급결정서」를 첨부

- ※ <u>별지 제1호서식「장애등급결정서」중 중복합산 결정내용은 반드시 심사결과외 다른 장애와 중복</u>합산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장애등급결정서의 재판정시기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여 안내
- 아울러 등록된 외국 장애인의 경우 6개월마다 적정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 변동(외국 이주 등)이 있는 경우는 장애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함.

(7)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후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은 국내인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
- ※ 다만, 외국인 등의 자격변동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7월, 익년 1월)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문을 통해 자격변동 확인 필요

③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 국내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검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u>단</u>, <u>의무재판정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u>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 다만,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진단서 및 검사비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음.

4 기타 행정사항

가. 외국인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관리 철저

-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은 등록된 외국인 장애인의 사망, 전출입, 서비스 제공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산 정리를 시행함
 - ※ 자격변동 및 출국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문 확인으로 반기별로 확인 후 변경사항 입력

- 2-3 장애등급심사 업무

목 적

○ 장애인의 장애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 및 읍·면·동 등과 장애심사 전문기관의 업무처리 절차 및 요령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 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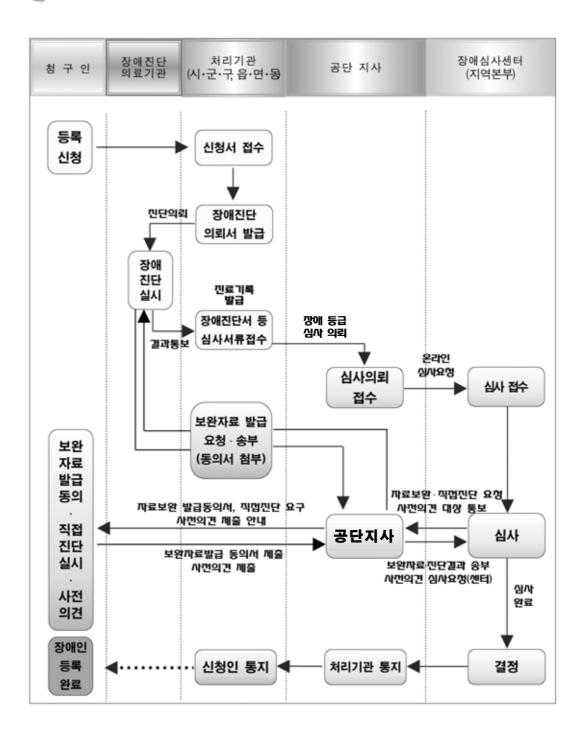
3 심사적용

○ 장애등급심사의 필요서류, 심사의뢰, 심사실시 등의 업무처리는 「장애등 급심사 규정」에 따라 처리함.

4 심사전문기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 제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으로 함.

5 등급심사운영절차



6 심사대상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조정신청)의 경우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등 개별사업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관련 지침확인요)
 -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상기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의뢰하지 않고 대상자로 확정함. (심사완료 이력이 있으나 다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심사대상임)
-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시 주장애만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부장애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 없으며, 이 경우에도 부장애를 이력으로 처리하지 않음.
 - 다만, 지원요건 충족을 위하여 주장애와 부장애 합산이 필요한 경우는 모든 장애에 대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 장애심사서류 완화방안(확대)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최근 2년(장애유형에 따라 최근 1년 또는 5년)이 내에 등록한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지 등을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음.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의 구비서류 완화 참조)

8 장애등급심사관련 기타 안내사항

□ 장애인 권리구제절차

○ (사전의견진술제도)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재판정을 위한 장애등급 심사 과정에서 등급 하락이 확인되는 경우는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하기 이전에 지사를 통해서 사전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진술을 제출한 자는 별도 부서(장애심사센터 이의신청부)에서 확인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 이의신청은 장애등급 변경처분 후에 이루어지는 바,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적절한 일시중단이 업도록 장애심사결정을 신중히 하고자 함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이의신청심사건 등 중 공단에서 『장애 등급 판정기준』상 장애항목의 문리적 적용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의사와 복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 위원회에서 심층심사
 - 심사건별로 6~8인(위원장포함)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심사 대상자에게 공단에서 안내함
- (대면심사)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건 중 공단이 필요성을 인정 하는 건은 신청인을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위원이 장애상태 확인 후 심사진행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중 공단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이의신청 안내 강화) 장애인이 이의신청 관련 상담 요청 시 지사에서 심층상담 시행

□ 장애심사 관련 서비스 제공 강화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제공대상)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 기타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 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 장애등급심사 및 복지급여 ·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 안내 제공,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
 - (제공방법) 공단 직원이 장애인 방문
 - (신청) 장애인이 공단 홈페이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콜센터)로 전화, 공단 지사 방문신청

-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 (제공대상) 자료보완이 요구된 자 중 중증장애인 등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병원에서 심사자료 직접확보
 - (신청) 장애인이 공단 지사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제출

○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공단의 요구에 의한 추가검진비용 및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제공 시 수수료 등
- (지원한도) 공단의 요구에 의한 추가검진비,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심사자료 직접확보 지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하여 1인당 15만원이내
-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한 경우
 -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에 1급 또는 지체장에 1 급을 등록한 경우(예, 상지기능 2급과 하지기능 2급을 중복합산하여 지 체장에 1급도 가능)
 - ※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 (확인방법) 공단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와상상태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확인을 의뢰한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결과처리) 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통보한 경우 시·군·구 (읍·면·동)에서 장애심사를 면제하고 기 등록된 1급 장애를 인정, 와상상태가 아님을 통보한 때에는 장애등급심사 진행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규정상의 구비서류)

- ※ 최초 장애진단 시 이전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이용 **무조건 새로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에 유의
- ※ 의무적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진단서상 기재된 재판정) 재판 정, 직권재판정 장애진단 시 **뇌병변장애, 최수장애를 제외**하고 모든 장애 유형별 필요한 검사 새로이 시행하여야 함
- ※ 단,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재판정시는 아래 완화적용년도를 고려하여 이전 장애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활용 가능 하므로 참고하여 안내

완화적용 년도	장 애 유 형
1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2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안면, 장루요루, 간질
5년	언어, 지적, 자폐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지체 절단	장애진단서	절단부위 및 진단소견 기재
시세 걸인	검사자료	절단부위 확인 가능한 X-ray 사진
	장애진단서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 원인상병 등에 대한 소견 기재
상하지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관절장애) 소견서[장애가 있는 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 기재]
관절	검사결과지	X-ray 사진, 관절각도 검사결과지 등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장애진단서	관절의 동요가 있는 부위, 발생 시기, 건측과(정상부위)와 비교한 동요정도, 보조기 착용 유무 기재
동요관절	검사결과지	◆ 인대파열 등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MRI 있으면 제출◆ 동요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환측(장애부위)과 건측(정상부위)의 STRESS VIEW X-RAY 검사 또는 KT-2000 또는 TALOS
	장애진단서	인공관절치환술 부위 및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구체적인 소견 기재
인공관절 치환술	검사결과지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상태(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 등)를 확인할 수 있는 X-RAY나 뼈스캔 사진 등의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치료경과 등 확인용)
	장애진단서	습관성 탈구 부위(관절), 발생 시기, 탈구 빈도 기재
하지관절습 관성 탈구	검사결과지	탈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습관성탈구로 인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진료기록지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원인상병(진단명), 발생시기, 근력등급, 마비정도 등 기재
상지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하지 기능 장애	검사결과지	공통 :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척수병변 : CT, MRI 등 신경 손상부위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장애진단서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기재
척추 고정술	검사결과지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 가능한 척추의 X—ray 나 CT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장애진단서	원인상병(진단명), 강직된 척추부위, 강직정도와 척추의 운동범위 및 기타 진단소견 기재
강직성 착추질환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소견서 :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척추운동 범위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의 X-ray 사진
	진료기록지	주요 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장애진단서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 만곡 각도 또는 신장(왜소증) 등에 관한 소견 기재
변형 장애	검사결과지	 ◆ 다리 길이 차이 : X-ray 사진, SCANOGRAM 등 영상 ◆ 척추변형(만곡) : 척추의 X-ray 사진 ◆ 왜소증 : 신장(키)을 확인할 수 있는 SCANOGRAM 등 영상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과기록지 있으면 제출

〈뇌병변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 기재
 뇌출혈, 뇌경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 등 기재)
4등 식등 뇌병변	검사결과지	새로이 촬영하지 않고 기존 촬영했던 영상 자료 사본 제출 MRI(뇌경색, 뇌손상), CT(뇌출혈) 등 뇌영상 자료
	진료기록지	<u>발병당시 주요 경과기록지</u> 과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용,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장애진단서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비델지수 등 진단소견을 기재 ※ 의사가 수정비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하는 유이는 정상 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조 요청
뇌성 마비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 등 기재)
	검사결과지	MRI 등 뇌 사진은 이미 촬영한 자료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며,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장애진단서	최근 1년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복용 종류·기간, 약 복용 전·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상태를 기재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치료경과 및 치료반응, 수정바델지수, 호엔야 척도 등 기재)
파킨슨병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1개월간과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 투약 기록이 없으면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 보완(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 · 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 · 장애정도 등 확인용) ※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초진기록지

〈시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최대 교정시력(굴절력)과 진단소견을 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시력 장애	검사결과지	 ❖ 전안부 사진 : 각막 · 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 칼라 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망막 · 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그 밖에 시력검사, OCT(광간섭단층촬영), VEP(시유발전위검사), ERG(망막전위도검사) 등 시력관련 기 시행된 검사결과지 있을 경우 제출요함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 (미제출시 심사를 진행하고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시력 저하의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장애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 최대 교정시력(굴절력) 및 진단소견 기재
시야	소견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장애	검사결과지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모두 제출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청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두 귀의 청력 손실 정도 및 진단소견, 청성뇌간반응검사 판독소견을 기재
청력 장애	검사결과지	 ❖ 순음청력검사(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모두 제출 -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심한이명의 경우에 한함) : 이명도 검사 결과지(2회 이상 반복시행) - 어음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단, 심한이명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작성한 경과 기록지, 퇴원요약지 및 이명도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기록(2회 이상 반복 시행) 추가 제출
	장애진단서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기재
평형 기능 장애	검사결과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 (그 외 동요시,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검사 등 기 시행된 자료 있을 경우 제출 가능)
	진료기록지	과거 1년간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언어장애유형, 원인(진단명) 및 진단소견을 기재(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 언어지수 등)
검사결과지	[장애유형별로 해당하는 검사결과지 제출]
진료기록지	 ◆ 6개월 이상 언어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언어치료기록지 ◆ 후두를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

〈지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
지적 장애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이 포함된 상세한 소견 ※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요함. ※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인한 전체 지능지수 판별이 어려운 경우, GAS 및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 추가
	진료기록지	 ◆ 유아의 경우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진료기록지 없을 경우 학적부로 대체 가능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
치매 (노인성 치매 제외)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이 포함된 상세한 소견 ◆ 뇌손상,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 MRI, CT 등 사진 자료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발병 당시와 최근의 기록지, 퇴원요약지 위주)

〈정신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기재
진료기록지	 ❖ 초진기록지 : 원인 상병으로 진료받은 최초 기록지 ❖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제출(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자폐성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진단명, 장애의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 점수(발달장애 평가척도) 등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웩슬러지능검사, 자폐성척도(K-CARS 등)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신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 1개월에 1회의 투석기록지로 만3개월분 ─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 생략이 가능하나, ─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요 ◆ 신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

〈심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정도, 진단소견 등을 기재❖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생략
진료기록지	 ◆ 이식수술기록지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한함 ◆ 최근 1년간 외래진료기록지 : 외래 통원치료 병력 확인 가능 ◆ 수술 및 시술기록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근 9개월 동안의 입퇴원기록지 및 입원경과기록지 : 입원병력, 입원횟수,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있을 경우 제출)
검사결과지	 ◆ 운동부하검사결과지 필수 제출 (단, 심장질환 및 신청인의 상태 등으로 운동부하검사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결과지(좌심실구혈율 확인 위함) ◆ 선천성 심질환으로 청색증이 있는 경우의 경우 : 산소포화도 검사결과지 ◆ 흉부 X-RAY사진 및 심전도검사 결과지 모두 제출 :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 입원 당시와 퇴원 후 흉부 X-RAY사진 함께 제출 ◆ 심근허혈로 입원 병력이 있을 경우 : 심근효소검사결과지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질환의 중증도, 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에 관한 주요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 폐기능 검사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기 검사자료 있을 경우 모두 제출) ※ 진료기록에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미비한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하되, 표준화된 검사로 하고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가장 좋은 결과로 장애등급 인정) ❖ 인공호흡기 및 늑막루의 경우 시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 ❖ 폐를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

〈간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 유무와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 진단명, 상병의 중증 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등)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및 입퇴원요약지) ◆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 중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결과지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또는 INR(항응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등) ◆ 간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

〈안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노출된 안면부에서 변형부위의 면적,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증빙 사진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칼라사진 -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최소 3장)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또는 발병시부터 6개월간의 주요 경과기록지

〈장루·요루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장루·요루의 종류 - 합병증(배뇨기능 장애, 장피투공 등)의 유무 및 정도, 기타 진단소견 기재 - 배뇨장애 있는 경우 배뇨기능장애에 대한 자세한 소견
증빙사진	❖ 장피누공이 있는 경우 환부 일반사진 및 방사선검사 결과
검사결과지	❖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요역동학검사 결과지(그 외 배뇨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능)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 : 장루・요루의 종류, 합병증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 ※ 최소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진료한 날의 당일진료기록 필수 제출

〈간질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발작의 종류 및 빈도 등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간질장애 소견서			
진료기록지	 ◆ 신규등록자 초진 기록지 및 최근 2년간의 진료기록지(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 요약지 등) ◆ 재판정의 경우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 뇌파검사는 이미 시행하여 의무기록지에 있는 경우만 제출 			

• 2-4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목 적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 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하 "장애인복지카드")의 발급 및 관리업무 절 차를 규정하기 위함

2 개 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한다)중 1종류 만을 발급함.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 '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 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연회비 면제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작 하고 이를 해당 시·군·구로 우송

③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및 교부

- (1) (민원인)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재 신청자도 포함)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서식 2>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카드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장애인등록증 신청대상〉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신규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본인이 직접 신청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 복지카드를 직불카드의 형태로 신규신청 및 재발급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 대리신청가능범위 : 장애인등록시 대리신청범위와 동일
- (2) (읍·면·동주민센터) 행복e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즉시 처리)
- (3) (한국조폐공사)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 (1일 이내)
- (4) (신한카드사) 상기 (3)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3일 이내)

- ※ 다만, 복지카드를 <u>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u>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자체 심사결과 장애인등록카드 발급 부적격자에게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청각장애인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심사 및 결과통보를 실시할 수 있다.
- (5) (한국조폐공사) 상기 (2)항 및 (4)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작하여 등기로 시·군·구로 등기 우송 (6일 이내)
 - ※ 발급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림서비스로 문자 통보
- (6)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내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
 - 교부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등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부
 - 읍 면 동장은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시 장애인복지안내문을 함께 배부
 - 부득이하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등록증은 3회 이상 절단 폐기 하고 폐기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전송한다.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받은 복지카드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 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2인이하 담당자를 선정하여 2인이하여야 한다.

4

4 >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발급

〈재발급 대상〉

- 1)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 · 훼손하였을 경우
- 2)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3)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 4)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5)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 대상이 아님

가. 업무처리절차

- (1) 읍 · 면 · 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 또는 장애등급 조정 결정
 - 입력자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확인
 - ※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인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신청하도록 안내함
- (2) 읍 면 동에서 복지카드 재교부 자료 등록
- (3) 이하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나. 기타 처리 사항

- (1)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 할 때에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이상 폐기· 절단하여 불법사용을 못하도록 한다.
- (2)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안내

[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가. 민원 이송 제도

-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인근 읍면동에서도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 기관 (읍면동)으로 이송하는 제도
 - ※ 민원사무처리법률 제11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cdot 교부) 및 제12조(민원 서류의 이송)근거

나. 장애인등록증 등 수령 방법 개선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등록증 등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등 기우편발송 가능(등기우편료는 신청자 부담)
 - 등기 우송에서 본인 · 가족 등 수령자 부재시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전달
- 배송 전문 업체와 계약에 의한 수령지 배송서비스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극 실시
 - ※ 서울 및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장애인 본인에게 직접 배송서비스 실시중

다. 중증시각장애인 등록증 점자 표기

- 1-3급 시각장애인에게는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여 교부
- 점자 스티커는 시군구 단위로 제작 기관에 의뢰하여 제작
 - ※ 제작기관 : 점자도서관,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시 •군 •구 시각장애인단체 등



라. 장애인등록증에 재판정시기 및 유효기한 표기

○ <u>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3년 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u> <u>재판정시기 및 유효기한 표기 중</u>



마.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인한 등급변경시 직권으로 복지카드 발급

- 재판정으로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발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 단. 신용카드 기능이 겸비된 복지카드는 신용정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직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

6 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가. 복지카드 등의 발급 기간 중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 (1) 신청서를 접수한 지자체장을 발급자로 제작
- (2) 이후 전출지로 교부된 등록증등을 전입지로 송부
- (3) 전출지 및 전입지에서는 관련 내역을 전산 입력

- 나. 거주불명등록제도 실시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함
 - (1) 거주불명등록제도 실시 전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별도의 장애등급심사없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함.
 - 다만, 말소기간 중 의사 진단에 의한 재판정 또는 의무재판정이 있는 경우는 재판정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실시하여야 함.

🧑 복지카드 등의 회수 및 폐기

가, 복지카드 등의 회수 및 폐기 대상자

- (1)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
- (2)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 (3) 장애인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 장애등급 및 유형이 변경된 경우
 -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 복지카드 재발급 한 경우에는 기존의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회수 폐기하여야 함
- 나.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특별자지도·시·군·구청장은 반환기일까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 장애인등록증 반납율 저조(최근 5년간 35.9%)
- (지적사항)2007~2011년까지 전국의 장애인자격 탈락자(사망자 포함) 중 장애인 등록증 반납율은 35.9%로서 저조
- (조치사항)장애인등록증 부당 사용이 없도록 장애인등록증 반납이행 철저 및 유효 기간 설정 등 관리 필요
- (향후계획)장애인등록증 유효기한 설정 추진 중으로 향후 시행시기 및 방안은 공문 으로 별도 통보

관 련 서 식

■ 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

수 있습니다.

장 애 등 급 결 정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심사번호			장애등급결정일자			
시·군·구			신 청 유 형			
결 과 구 분			최종결정등급			
장애유형 1			장애유형 2			
재판정주기		년	재판정기한			
		심사	결정내용			
심 사 결정내용 1						
심 사 결정내용 2						
중복합산 결정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등급이 위와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1쪽)

지스비스		고 스이 기		(^ - - - - - - - - - - - -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E+L "									
	성명			영문성명 ¹⁾					
	주민등록변	번호(외국인등록번	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1	성별 , , , , , , , , , ,				
장애인	시티H	χ.L.			[]남 []여				
(신청인)	사회포경	사회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현)주:	소			전화번호				
	(전)주:	<u></u> 소			전입일자				
		한글		신청인과의					
보호자	성명	영문 ¹⁾		관계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세대주)		6 년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별]								
 장애부위	보행상	장애 ([]	있음 []없음) :	기타 :	입소 시설명				
및 상태	장애명				중복장애명				
상담소견	[] 정 장	애진단을 의료	4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기관에 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복지욕구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특수교육 []취업알선 []			직업훈련 []기타 시설입소					
국가유공	자와 지	원대상자로서	상이등록자(상이등	급 1급~7급)	여부: []해당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등	종류	신청 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장애인등록([]복지카드 신청)		[]신규		· 재발급 사유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 []기간만료 []훼손 []분실 │ []기재사항 변경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반납		· 반납사유 _[]사망[]양도·증여[]폐차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교부 []대여	[]수리	[]] 등록말소 [] 기타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재발급		[]분실[] 훼손[] 보호자변경 []기타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카드전환(-)					

210mm×297mm[백상지 80g/m²]

¹⁾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제2쪽)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구분	[]복지(구입)카드 []보호자 카드			카드구분 []신용 []직불				
TIOUGI	직 장 명				부서.	/직위	휴대전화	
장애인	직장주	소					전화번호	
H용되	직 장 명				부서.	/직위	휴대전화	
보호자	직장주소				•		전화번화	
대금결제	대금청	구지 []자	ŀ택 []직장					
	대금결	제일 []1	일 []5일	[]	11일	[]17일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	호			금융:	기관명	예금주명	
소유차량	장애인	용LPG자동차	[]있음[]압	성음	차량당	명의 []본인	[]보호자	[]공동명의
[장애인사용	자동차표	지 / 고속도	로통행료 할인	카드	발급(지	배발급)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			
운전자	주소			전: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단체 • /	시설명		사	업자등	록번호		
- 시설	소재지 (전화변	d ē :)					
(장애인자동	종류 []장애인복지단체-시설			[]	노인의	료복지시설		
차표지발급 (재발급)	대표자 성명			주 신.	민등록! 고번호	번호(외국인등)	목번호 또	는 국내거소
	소유자 성명			주	민등록	번호(외국인등	·록번호 또	 = 국내거소
ᅰᄃᆁ	(장애인과의 관계 :)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도				
 [장야인보조	- 5기구 교	부(대여-수리) 신청]	•				
주거형태 []재가(자가, 전세, 월세)			세)	[]人	설입소 []그 밖의 형	태	
희망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명()		
수리가 필요	한 부위			교부	(대여•	수리)상 특별	히 희망하는	사항
교부받 실적(최		교부년도	종류	교부	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		•					F::	11.1.7.00 / 21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3쪽)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감면서비스 신청]

년강보험증번호:) []휴대전화요금 감면 []전기요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전기요금 감면]건강보험료 감면(건강보험증번호: TV수신료 면제

	첨부서류					
	1. 사진(2.5cm×3cm) 1장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기	다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①장애인등록 신청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 서류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3. 장애등급 심사 시「국민연금법」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장애연금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신청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②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표지 발급 신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카드 신청	사진(3cm×3cm) 1매, 할인카드발급비용(4,0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자동이체를 신청한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제외면보기 표시된 충경의 자료를 제기하기 마다니다.
 3. 장애인용 LPG자동차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대상인 LPG자동차(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를 말합니다.
 4. 등록장애인 여부와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인지 여부는 공무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5.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란에 V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6.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6. 본인는 이 전 합구시다와 현단하여 '현사'라고합 세30세18에 떠는 항상하고 00억0로 0억억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 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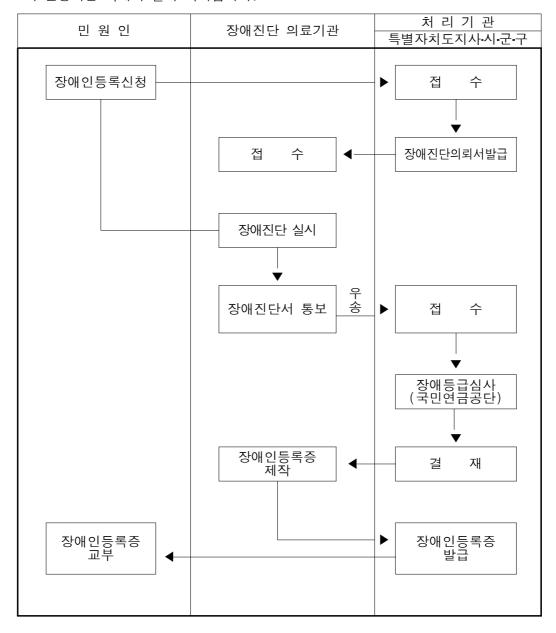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제 호 장애진단 의뢰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주 소: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의 장애진단을 의뢰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장) 귀하	

※ 첨부:장애진단서 서식 2부

(뒤쪽)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시실과 청력검시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 후과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하다 □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1.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 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 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 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화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 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진 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흉부외과소아 청소년과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간 장 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괴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간 질 장 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또는 소아청 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해당 장애유형란에 √한 후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장	애	진	단	서					
	성 명				성	별					
진단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장애상태	장애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기관 및		~			의를	료기관	명 (), ⊆	의사명 ()
의사		~			의	료기관	명 (), ⊆	의사명 ()
진단의사의 소견	※ 장애등급판정	성기준에	의거 김	검사항목	록검사결	열괴장이	배정도를	를 구체적	으로 기계	H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	정할 /	시기				
「장애인복	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저	3조제	3항에	따라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	
합니다.											
	(l명 면허번: 자격번:	,		•	또는 의 과목	,	어린	일	
	진단기관명 직인										
(시청 • 군 ·	수・구청장) 귀	하									

※ 비고

-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 3. 장애등급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유형과 등급을 기재합니다.
- 4.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 복지부 고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5.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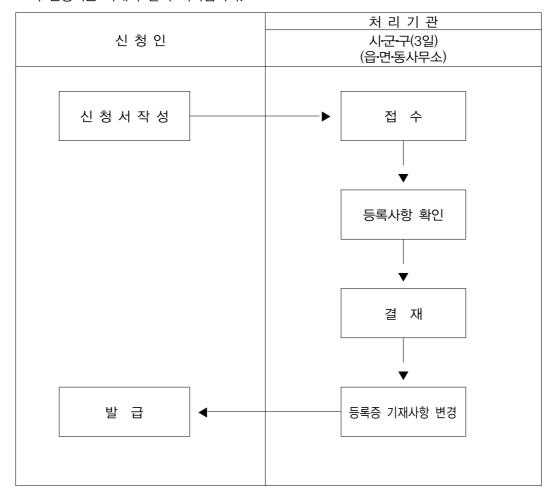
장애인등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앞쏙)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	간	3일	
TIOUOI	성 명		주[<u>민등록번호(</u> 오	국인등록:	번호 또는 국니	배거소신고번호)	
장애인	주 소				(전	화번호:)	
1	성 명			생년월일				
보호자	주 소				(전	화번호:)	
발급기관								
	현 형	Ħ		변 경		Д	ㅏ 유	
변경내용								
「장애인! 신청합니!	_ 복지법 시행규칙」제 가.	4조제4항에 따라	위오	나 같이 장	애인등록	특증의 기재.	사항 변경을	
				نا	9	_		
트벼자네	도지사시장 · 군수 · ·	신청 그처자 괴해	경인			(서	명 또는 인)	
_ 그 리시시-		1 00 119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대당 공무원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시	항					
1. 이 서식은 2. 트변지되	은 장애인등록증의 기재내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우에 · #겨!	 신청합니다. #요요 기로	나 중 자시		수수료	
2. 독필자시 기재사형	도시자시청군구구청정근 을 변경발급하여야 합니	- 중에건궁숙/1도에 1 다.					없음	
					210mn	n×297mm[백	상지 80g/m²]	

(뒤<u>쪽)</u>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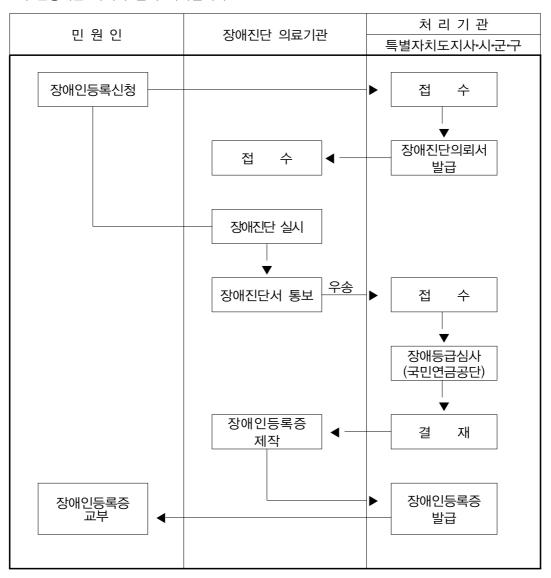
1	0	사자
١.	_	r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 안내	
	성명						성별	
장애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	는 국내거소신	고번호)		[]남 []여	
	주소			(전화번호:)	입소시설명	
니는지	성명			생년월일		장애인	과의 관계	
보호자 	주소					(3	전화번호:)	
장애인동	등록증	부번호 (<u>1</u>	제 고부기관)	호		교부일자		
							T	
	구 분		현 7 ————	내	※ 조	정	신청사유	
포장시원	장애명						[]예전보다 더욱 심함	
조정신청 내용	장애등급						(심한 상태:)	
	중복장애명						[]예전보다 호전되었음	
	진단기관명						(호전된 상태:)	
	인복지법」제3 신청합니다.	82조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규	식 제6조제1형	상에 따라 우	와 같이 장애등급의	
					년	월 일	일	
					_	 청인	- (서명 또는 인)	
- W-1			-	l	_	0	(10 = =/	
등멸사7 	<u> </u>	· 군수	- 구성상					
							수수료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ō					없음	
						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민	[연금법] 에 의 ^학	긴 싱배'	건금 신성시	T의 경우만 해!	당입니다)		(서명 또는 인)	
※ 표란은	·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니 :	쓰지 마십시오.				
						210mm×	297mm[백상지 80g/m²]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주 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 제 호(년 월 일 발급)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재판정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 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기한 :							
위의 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등 록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 별:
○ 주 소:
○ 보호자성명:
○ 반환등록증: 제 호(년 월 일 교부)
○ 반 환 사 유:
○ 반 환 기 일:
○ 반 환 장 소:
벌칙: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장애인복지법」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장 애 인	증 명 서	l				
	성명	주민등록번호(9	가국인등록번호 <u>!</u>	또는 국내거	소신고번호)			
장애인	주소					사 진 2.5cm×3cm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2.0011/10011		
장애종별 및 등급			부장애					
등록일자			등록번호					
용 도								
제출처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별지 제1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1. 신청기관									
	사무명					(신규	사무 [그 기존	사무 ㅁ)
	사무구분	민원(고객)시	무 ㅁ			내부사두	그 (1	범죄 수 사사	(미 위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ㅁ	불필요	□ (-	불필요 人	: 유)
0.010111	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								
2. 이용사무	사무처리기간				보	존기간			
	관련근거 및 내 용								
		구비서류	명			보유 7	기 관	비	고
3. 공동 이용	1,		(유형:) (-	출력□)				
행정정보	2.		(유형:) (-	출력ㅁ)				
(구비서류)	3.		(유형:) (출력□)				
	4.		(유형:) (-	출력□)				
4. 처리기관									
5. 공동이용의 필요성 (출력권한 신청시 사유 별도기재)									
6. 연간 이용량									
7. 담당자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연	락처	

기 재 요 령

(뒷 쪽)

1. 신청기관 : 공동이용을 신청하는 기관의 명칭을 기록합니다. (예:국세청, 안전행정부, 경기도, 구미시, 〇〇공사·공단, 〇〇은행 등)

2. 이용사무

- 가. 사무명 : 법령, 조례·규칙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정확한 사무 명칭을 기재 하고, 신규사무·기존사무 중 해당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 나. 사무구분 : 민원(고객)사무 또는 내부사무를 구분하여 해당 □에 √ 표시를 합니다.
 - ※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에 따른 범죄수사를 위한 사무의 경우, 범죄수사사무의 □에 √ 표시를 합니다.
 - **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재 후 공동이용 하실 수 있으며, 공동이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사무의 정보유형변경 또는 출력권한요청시에만 제출 요망).
- 다. 사전동의 필요여부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필요 여부를 표시합니다.
 - ※ 사전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표시했을 경우 그 사유를 법 제42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2항 각호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라. 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 : 공동이용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의 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재합니다. (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
- 마. 사무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 해당사무의 처리기간 및 보존기간을 기재합니다. (예 : 5년)
- 바. 관련근거 및 내용 : 공동이용 사무의 법적 근거를 "000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제0조 제0항"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별지에 작성)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해당 사무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명칭 및 유형을 기재(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반드시 출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옆의 □에 √ 표시)하고, 해당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을 기록합니다.(구비서류가 4건 이상인 경우 추가하여 기록합니다) 기존사무의 변경 신청을 할 경우 비고란에 '정보추가', '정보유형변경', '출력 권한신청' 등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기록합니다.
- 4. 처리기관: 일반적으로는 신청기관이 되나, 법령상 신청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관을 기재합니다. 예시) 모든 시·군·구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시·군·구"로 기재한다.
- 5. 공동이용의 필요성: 해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관련 현황 및 사유를 기록합니다.공동이용 행정정보의 출력권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 6. 연간 이용량: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1건에 대하여 1회 이용으로 보아 연간 예상되는 공동이용 횟수와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축되는 문서량, 신청기관의 예산절감효과 또는 민원인이 얻는 편의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합니다.
- 7. 담 당 자 : 사무에 대한 공동이용을 신청하는 자로서, 공동이용을 신청하는 기관의 해당 사무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서식 1〉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을 받은 자	한글 (한자)()	주덕	민등록번호					
	주 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위	본인의 장애인증	명서 발급을 위 사람	에게 위임합니	니다.						
0] 	년 월 일									
장	위임자: (서명 또는 도장)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성명:)여	에 대한 증명서 발급	을 동의합니디	- .		발급통수				
법정대		년 월	일							
법정대리인동의	법정대리인 : 관계: 주소:	(주민등	록번호	_) (서명	또는 도장)				
₩ #	 -의사항									

-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 일부터 기산하여 6월입니다.
- 2. 2부 이상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장애인증명서를 위임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5.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6.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식 2〉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필수)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

신한카드㈜ 귀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 공공기관 및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및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및 제3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 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조회·수집·이용·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음성data, 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업(직장명, 부서, 직위, 주소, 전화번호), e메일, IP Address, 쿠키정보, 리퍼러URL등 (본인이 거래하는 비씨카드 회원사간 식별정보의 교환포함), 신용거래정보(본 동의 이전·이후의 대출현황, 담보 및 채무보증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신용카드 한도 및 이용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신용능력정보(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공공기관보유정보(개인회생·파산·면책·채무불이행자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각종 체납정보, 출생·사망·이민·부재·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의 변경 등 주민등록관련정보, 공공보험·공공요금관련정보 등), 다른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기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
- □ 조회 목적 : 이 계약(이 계약이전 발생 계약 포함) 등 금융거래의 설정·유지 또는 사후관리, 신 용관련 통계모형 개발 및 분석, 기타 금융거래 관련업무 등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카드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본인 확인, 신용조회, 카드대금 결제 등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카드·금융상품의 부가·제휴서비스 제공,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등
- □ 개인(신용)정보 제공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이 계약(이 계약이전 발생 계약 포함) 등 금융거래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본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휴대폰 본인인증, 법령상 의무이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업체(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모집인, 채권추심위임계약직 등)에게 위탁하여 당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부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카드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매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귀사 및 제휴사의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사은・판촉행사 등의 마케팅 활동, 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개발연구, 보험서비스 제공, 보험대리점 업무, 통신관련 서비스 소개,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방지 등 귀사의 영업목적 업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정보 확인 및 활용(정보제공・활용 업무 예 : 카드배송, 우편물 / E-mail / SMS 발송업무, 카드회원유치, 카드・금융상품 소개, 이용권유,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업무, 반송우편물 주소정정 등 귀사의 카드관련 업무 처리 위탁, 매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 카드상품의 부가/제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업무(서비스 대금 정산, 본인 확인 등)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 등

☞ 당사는 외부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만을 제공 합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최소	한의 정보					
□ 조회동의 효력 기간 : 상기 동의는 이 계약의 소멸 우 기존 계약의 소멸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							
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수집·())용 동의일로부터 개인	(신용)정보의 =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	J음을 알려드립	니다.					
 ※ 이 동의서는 카드 재발급, 카드유효기간 만료로 인형 ※ 동의 철회에 의한 교체발급 등의 경우에는 이 동의은 계속 유효합니다. 								
※ 상기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다.	없이 당사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					
※ 귀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 하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 법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신용 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귀하에게 연락히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 용정보제공 이용자에 대	회가 정하여 고 하여 상품이나	시하는 방 용역을 소					
※ 본인은 이 동의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하가 신청하신 카드의 발문								
◆ 본인은 귀사가 상기 조회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은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			제공 활용					
	(동의현	♪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 카드론 이용 동의서 (동의함 □)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는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ARS, 홈페이지, 모바일앱, 신한은행 CD/ATM, VAN사 CD,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카드론 신청·이용 할 수 있습니다.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은 카드론을 신청·이용할 수 없으며, 추후 카드론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당사 및 신한은행 영업점 내방 또는 당사 콜센터(법정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하여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상기 등의 내용은 신규회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본 사항은 선택항목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3 미치지 않습니다.	카느돈 이용만 불가하며	, 카느말급에는	영향을					
			. *					
	년	월	일					
	년							
신청인 본인	년	월 (서명 또						

〈서식 3〉 Identific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Identification No.		Identific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Person with disabilities	Address							
	Guardian		Relation with guardian					
Type and degree of disabilities			Registration No.					
Purpo	ose							
Place of su	ıbmiss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named above is a person with disabilities defined by Article 2,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Year Month	Day				
		Mayor		(Authorization)				

<* 장애유형의 영문화 표기>

- 1. 지체장애: Physical Disability 2. 뇌병변장애: Disability of Brain Lesion
- 3. 시각장애: Visual Disability 4. 청각장애: Hearing Disability 5. 언어장애: Speech Disability
- 6. 지적장애: Intelectual Disorder(Mental Retardation) 7. 정신장애: Mental Disorder
- 8. 자폐성장애: Autisic Disorder 9. 신장장애: Kidney Dysfunction
- 10. 심장장애: Cardiac Dysfunction 11. 호흡기장애: Respiratory Dysfunction
- 12. 간장애: Hepatic Dysfunction(or Liver Dysfunction) 13. 안면장애: Facial Disfigurement
- 14. 장루/요루장애: Intestinal Fistular/ Urinary Fistular 15. 간질장애: Epilepsy
- ◎ 위의 영문 양식은, <별지9호, 장애인증명서>를 영문 번역한 것으로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할 수 있음

〈서식 4〉장애인등록 취소원

	장애인 등록취소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주 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장(배종별		등 급			
취소 사유						
본업	인(보호자)은 성	· 가기와 같이 장애인등록 취	소원을 제출하오니 수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인)		
구비서류	루 : 복지(신용)	카드 1부				
시장・	군수·구청장	당 귀하				

〈서식 5〉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장애인등록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주 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1	 종별 등급		진 단 일			
	금 액 금 액)		원			
계 좌	번 호		금 융 기 관			
예금	금 주		신청인과의 관계			
담당공무원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필 □ 장애진단 여부 확인 필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필 □ <u>진단비 및</u> 검사비지원 증빙영수증 확인 필 *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본유	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등록진단비(검사비)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수급자의 복지계좌로 지급됨을 안내)						
* 검사비 신청의 경우 비용지출 영수증 첨부						
시장・	군수·구청	l장 귀하				

〈서식 6〉20	14년도	국고보조금	금 교부신청서							
기 관	<u></u>	명			대	丑	자			
소 ス	H	지								
사 업	제	목								
보 조 사 업	의 목	적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지 원 대	상 자	수	명 (장	애인 중	국민기초	생활보	보장수급;	자 수)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스	L요 액	국고보조액	지방	비부담의	<u> </u>	자부	.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신청	자 (기관명	및 대표자) :			(2	<u>"</u>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서식 7-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등	통의서		
	성 명		연 :	락 처		
환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열람 및	열람하고자하는 내용 및 사유					
사본 발급 범위	사본발급 받고자 하는 내용 및 사유					
	= 법정대리인)은 상기 (당 제13조의2에 따라 나합니다.				21조제2항 을 발급받	
				년	월	일
		본인(<u></u>	또는 법정	정대리인)	(ス	· 필서명)

비고: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7-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	록 열람 !	및 사본빌	t급 위임장		
	성 명			전 화 번 호		
① 수임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② 위임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등 열람 5	위임인은「의료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9월	일		
			위임인	<u>l</u> (자필/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8〉 장애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

	장애건	민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	
	성 명		전 화 번 호	
① 장애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② 신청인	성 명		전 화 번 호	
※ 장애인본인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하지 않음	주 소			
③ 진단서 시	본 사용처			
④ 담당공무원	원 확인	 장애인본인 및 보호 진단서사본상 등급고		동일 여부확인
	년	얼	일	
특별자치 <u>!</u>	도지사ㆍ시장ㆍ균	근수·구청장 귀하	신청업	인 (자필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9〉이의신청서

				0	의	신	청	서			
장애인	성	명				주 민	!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	명				주 민	! 등 록	번 호		장애인고 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장애등급결 받	정서의 은 날	통보를					년	달	월 일		
처분의 L 통지된	내용 또 된 사항	=									
이의신청 추	되지 및	사유									
장애등급(신청을 하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등	등급심사결과	에 대하	여 이의
					20	년	월 일	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	도지스	├·시경 	당 • 군	수•	구청정	당 구	하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0〉장애등급심사 서류반환 요청서

	장애	등급심사 서류	반환 요청서	
	성 명		전 화 번 호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법 제32조 및 급 와 같이 반환요청합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 시 제출한
	1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참고자료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수
	I. 장애등록심사 일반		16
	Ⅱ. 심사진행 과정		14
	Ⅲ. 장애등급 판정		16
	IV. 이의신청		17
		1. 구비서류 공통(18)	
	V. 구비서류 관련	2. 지체장애(1)	
장애		3. 뇌병변장애(9)	
등록 심사		4. 시각장애(4)	
		5. 청각장애(2)	42
		6. 지적장애(5)	
		7. 정신장애(2)	
		8. 신장장애(2)	
		9. 호흡기장애(1)	
	VI.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		8
	계		113

중분류	질 문 내 용
	1. 장애진단서 서식이 왜 바뀌었나요 ?
	2. 4~6급장애도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3. 장애등록심사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4. 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나요?
	5.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
	6. 장애인연금 신청 후 장애등급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연금 신청을 각하처리 하는 경우 장애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7.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필요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8.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을 심사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T TANCELLI	9. 장애등급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I. 장애등록심사 일반	10.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서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지 않아도 되나요?
	11. 장애인연금 신청과 무관하게 '09.1월에 지체장애 2급을 등록한 자가 '11.4.15 시각장애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신청하면 어느 장애를 대상으로 장애 등급심사를 하나요?
	12.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는 자가 '09.1월에 등록한 지체 장애 2급과 '10.5월에 등록한 시각장애 5급이 중복되어 있다면 어느 경우가 장애심사 대상 인가요?
	13. 지체장애1급(주장애), 정신장애3급(부장애)으로 중복합산해도 1급인 기존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시 두가지 장애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14. 와상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되나요?
	15. 2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도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을 받으면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16. 지체·뇌병변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도 1급인 경우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으로 심사를 제외할 수 있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1. 장애등급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 장애등급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3.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그 기간동안 복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4.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해서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하던 중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취소하면 심사 반려가 가능한가요?					
	5.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가 학회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15일 이내에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6.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Ⅱ. 심사진행	7. 진료기록지를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에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되나요?					
과정	8.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자료를 직접 받는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9.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느 자료까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10.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장애진단 또는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11. 장애부위 일반 사진을 촬영해서 내도록 자료보완을 요구 받았습니다. 장애부 위를 사진 찍는 것이 불쾌한데도 찍어야 하나요?					
	12. 직접 진단이란 무엇인가요?					
	13. 직접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4.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가 직접 진단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Ⅲ. 장애등급 판정	1. 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2.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등급을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3.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4. 내과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언제 장애를 판정하나요?
	5. 어떤 장애가 있어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6. 최근에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7. 인공관절치환술 장애판정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8. 2009.9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종전 규정에 의해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나요?
	9. 지체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10.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11. 장애 재판정 대상자 및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12.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에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13. 여러 가지 장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각각 별도의 장애로 인정할 수 없는 (합산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14. 지체장애 중 뇌병변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15. 뇌병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편마비되었는데, 척추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합산할 수 있나요?
	16. 언어장애를 지적자폐정신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IV. 이의신청	1.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 장애등급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심사한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3.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의견제출제도가 무엇인가요?
	4. 사전의견제출제도는 왜 운영하나요?
	5. 사전의견제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6. 사전의견제출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7. 사전의견제출 신청에 따라 다시 확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8. 사전의견제출 안내 대상자인 경우 장애등급 재결정일은 언제가 되나요?
	9. 사전의견제출 안내 대상자인 경우 심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0. 결정보류된 건에 대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 첨부하면 다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11. 중복장애를 판정받은 사람이 한가지 장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2.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장애를 심사하나요?
	13.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14.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도 하나요?
	15. 대면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6. 대면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7. 대면심사를 받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방법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V. 구비서류	1. 기초·차상위 수급자, 일반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심사 등 경우별 장애심사서류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2.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때에도 장애상태 검사 등을 모두 새로 해야 하나요?
	3.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4.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발급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5. 장애등급심사 요청시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은?
	6. 진료기록지는 왜 제출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나요?
	7. 진료기록지라는 것이 무엇이며,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어느 진료기록지를 내야 하나요?
	8. 진료기록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9. 심장·간·호흡기장애 검사결과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10. 자료보완이 요구된 특정한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병원에서 어떻게 증명해주어야 하나요?
	11. 결정보류 되었던 사람이 다시 심사받고자 할 때 새로 MRI 촬영 등 검사와 진단등을 해야 하나요?
	12.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등급심사가 가능한 가요?
	13. 영상의학검사에 대해 판독소견이 있으면 영상자료는 없어도 되나요?
	14. 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왜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내야하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V. 구비서류	15. 장애심사 과정에서 소견서 보완이 요구되었을 때에 정해진 서식 외에 병원 의 자체서식 사용이 가능한가요?
	16. 장애진단 받은 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나요?
	17.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할 때 원본대조필을 찍어야 하나요?
	18.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X-Ray사진 등이 필요한가요?
	19. [뇌병변장애] 반드시 뇌병변장애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의사소견서로 심사받을 수는 없나요?
	20. [뇌병변장애] CT, MRI 등 영상 사진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21.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에서 예전에 찍은 CT, MRI 등 뇌영상 사진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했을 때 새로 찍어야 하나요?
	22. [뇌병변장애] 요양원에 거주하며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 진료기록지를 대체할 수 있나요?
	23. [뇌병변장애] '발병 당시 진료기록지' 란?
	24. [뇌병변장애] 진료기록지가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지가 필요한가요?
	25. [뇌병변장애] 여러 재활병원에 입원 및 진료기록이 있을 때 진료기록은 어느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26. [뇌병변장애] 발병 시 A병원에서 2~3일 치료 후 B병원에서 두달간 입원치료 후 7개월 동안 C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어느 병원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27.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서 1장에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진단을 함께 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아야 하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 구비서류	28. [시각장애] 전안부 사진과 칼라안저사진은 각각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29. [시각장애] 안구가 없는 경우에도 칼라 안저사진이 필요한가요?
	30. [시각장애]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는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31. [시각장애] 병원에서 안저사진 등의 촬영이 안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32. [청각장애] 청력장애 6급 심사 시에도 뇌간유발 반응검사를 꼭 시행해야 하나?
	33. [청각장애] 이명도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34. [지적장애]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35.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는?
	36. [지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평가 시 임상심리보고서에 지능지수 등을 기재했는데도 평가항목을 같이 기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37. [지적장애] 선천적 지적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진료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경우도 6개월 치료 후에 진료기록을 갖추어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38. [정신장애] 정신장애 심사과정에서 진료기록지 보완이 요구되었는데,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39. [정신장애] 기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재판정 받을 때 최근 1년간 치료받지 않았음을 사유로 장애등급이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40.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인 경우 의무기록지 제출은?

중분류	질 문 내 용				
V. 구비서류	41. [신장장애]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의무기록지를 몇 개월치를 내야 하나요?				
	42. [호흡기장애]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동맥혈가스검사 결과지가 모두 있어야 하나요?				
VI.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	1. 장애진단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어떻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3. 장애 검사비용(진단비 포함)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 장애 검사비용(진단비 포함)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6.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 등급심사를 받을 때 CT, MRI 등 고가의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7. 공단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8.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oxed{oxed{I}}$ 장애등록심사 일반(17건)

Q1. 장애진단서 서식이 왜 바뀌었나요?

○ 2011.4.1부터 병·의원(의사)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기존에는 의사가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을 표시하였으나, 2011.4.1부터는 더 이상 장애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장애진단서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2011.4.1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2.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록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에서 수행합니다.
 - * 4.1일 이전은 장애 1~3급만 심사 적용

Q3. 장애등록심사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 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 및 관련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장 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등급 판정

O4. 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나요?

- 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신체·정신 기능에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과 치료 후 잔존하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검사한 결과지(서류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정도가 등급 구분의 경계에 있는 등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는 지정된 지역의 자문의사로 하여금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진단토록 하는 직접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Q5.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

- 장애인복지법 상의 중증장애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며 장애등급이 3급인 자가 다른 장애를 추가등록 하는 경우에도 추가 장애 등록 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Q6.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등 서비스 재판정으로 장애등급심사결과 결정보류, 확인불가, 반려 결정통보 된 경우 장애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장애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Q7.
-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필요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심사 결정일이 늦어지는 경우 장애인연금은 신청일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 Q8.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재판정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결과 기존 장애등급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을 심사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장애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기등된 장애인 복지카드는 회수ㆍ폐기하며, 복지카드를 갱신ㆍ교부하고, 이후 하향 조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 Q9. 장애등급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① 신규장애등록·장애등급조정 신청자,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2011.4.1(신청일 기준)부터 적용
-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경우
- ③ 기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경찰청에서 허위 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
- Q10.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서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부가급여 대상 여부에 상관 없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 재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 Q11.
- 장애인연금 신청과 무관하게 '09.1월에 지체장애 2급을 등록한 자가 시각장애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신청하면 어느 장애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하나요?
- 시각장애만 심사하고, 기존 지체장애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 Q12.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가 '09.1월에 등록한 지체장애 2급과 '10.5월에 등록한 시각장애 5급이 중복되어 있다면 어느 장애유형이 장애심사 대상 인가요?
- 지체장애 2급에 대하여만 재판정을 시행하며, 지체장애 등급심사 결과가 3급으로 등급결정 시 시각장애에 대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단, 만약 시각장애 5급이 '10.5월 장애인등록 당시에 공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심사하지 않습니다.
- Q13.
- 지체장애1급(주장애), 정신장애3급(부장애)으로 중복합산해도 1급인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시 두가지 장애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하나요?
- 주된 장애등급의 장애유형을 재판정 받도록 함. 단 장애등급심사결과 주된 장애등급이 3급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장애의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 연금 대상자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부장애 장애유형에 대하여도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함. 장애인연금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부장애에 대하여 장애재판정을 시행하지 않음
- Q14.
- 와상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되나요?
-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한 경우
 -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예, 상지기능장애 2급 및 하지기능장애 2급으로 중복장애 1급도 가능)을 등록한 경우

※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 상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Q15.

2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도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을 받으면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와상의 상태는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에 1급 또는 지체장에 1급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시행시에만 와상상태 확인만으로 장애 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급 장애는 와상상태 확인만 으로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Q16.

지체·뇌병변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도 1급인 경우 공단의 와상상태확인으로 심사를 제외할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와상상태 확인 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뇌병변장애유형이 아닌 경우에도 와상상태 확인으로 심사 제외 함
-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한 경우
 - ·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뇌병변장에 1급 또는 지체장에 1급(예, 상지기능장에 2급 및 하지기능장에 2급으로 중복장에 1급도 가능)을 등록한 경우
 - ※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 (확인방법) 공단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와상상태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확인을 의뢰한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결과처리) 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 · 통보한 경우 시 · 군 · 구 (읍 · 면 · 동)에서 장애심사를 면제하고 기 등록된 1급 장애를 인정, 와상상태가 아님을 통보한 때에는 장애등급심사 진행

Q1. 장애등급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의 장애등급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또는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 질 수 있습니다.

Q2. 장애등급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 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개인민원 → 조회/ 증명→ 기타 → 중증장애재심사>진행상태조회
- Q3.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그 기간동안 복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재판정 받는 경우는 심사진행기간동안 기존의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경우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가 시·군·구에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이 되며, 이 경우 장애인 등록일 이후에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4.
-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해서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하던 중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취소하면 심사 반려가 가능한가요?
- 민원인이 지자체로부터 장애등급결정통보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취소하여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심사기관에 심사반려를 요구하면 심사 반려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기존 장애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Q5.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가 학회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15일 이 내에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 자료보완은 자료보완 통보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Q6.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2차례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심사가 반려됩니다.
- Q7. 진료기록지를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에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되나요?
- 중증장애인 등 필요한 경우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병원에 요청하여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공단에서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받으려면 의료법에 따라 장애인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편의 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이송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Q8.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자료를 직접 받는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등급심사 대상자로서 "자료보완"을 요구 받은 사람 중 "장애상태, 연령 등의 사유로 거동이 쉽지 않은 경우"나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있어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공단(담당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심자자료 직접확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9.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느 자료까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하며, 진료기록지(병력· 진료경과), 각종 장애상태 검사결과지 등입니다.
- Q10.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장애진단 또는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
- 의료법에 의거 장애 진단을 받거나 이를 위한 장애상태 검사를 받으려면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심사 도중에 검사결과지 등의 보완이 요구되면 병원을 또 방문해야 하므로 진단 시에 모든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셔야 편리합니다.
- Q11. 장애부위 일반 사진을 촬영해서 장애등급심사 서류로 제출할 수 있나요?
- 뇌병변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지체기능장애 등급을 판정하려면 MRI 등 뇌사진 자료 또는 근전도 검사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검사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육 위축 등이 분명한 중증장애인은 일반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장애등급심사 시 장애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012. 직접 진단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심사서류 만으로 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울 때 지역의 지정된 자문 의사가 직접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진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13. 직접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에서 장애심사 담당자가 공단 지사로 직접진단 대상자를 통보하면 공단 지사 담당자가 해당 장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자문의사를 방문하여 직접진단을 받습니다.
-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송부 받아 다시 심사회의 를 통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Q14.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가 직접 진단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2차례 직접진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반려됩니다.

- Q1. 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체절단에 의한 장애는 일반의사도 장애진단 가능함)
 -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하며, 청력장애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장비가 있어야 함
- Q2.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등급을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 따라서, 상병 발생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하며, 6개월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합니다.
- 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이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애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
- Q3.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수술 후 즉시 판정 가능한 경우 :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 기관이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 이식 포함 장애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

-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2세 이상)에 판정가능
- 선천성 정신지체(지적장애) : 만 2세 이상
-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Q4. 내과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언제 장애를 판정하나요?

- 심장·정신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등급을 판정
- 호흡기·간 장애는 원인상병 진단 후 1년 경과 및 2개월 이상 적극적 치료 후 장애등급 판정
- 복원수술이 가능함에도 장루·요루 조성술을 시행한 경우는 조성술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장애등급 판정
- 성인 간질장애는 발병 후 2년 경과 2년 이상 지속적 치료 후 판정
 - 소아청소년의 간질장애는 간질성 뇌병증인 경우 1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하며, 그 외에는 2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

Q5. 어떤 장애가 있어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해 치료를 마쳤거나 일정한 기간 꾸준히 치료하고 있음에도 잔존하는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항목에 해당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장애가 고정된 경우에 장애인 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 장애인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읍면동)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최근에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 2010년도부터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분절의 운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급을 결정(X-선 사진 등으로 확인) 합니다.
 - · 종전에는 환자 스스로 구부리는 정도를 측정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정도의 장애라도 환자와 의사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이 상당히 상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강직성척추질환은 X-선 사진 등으로 완전 골유합이 확인되고, 척추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경우에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Q7. 인공관절치환술 장애판정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 2010년도부터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수술하고 6개월 경과 관찰하여 불안정이나 염증소견이 있는 등 수술 예후가 나쁜 경우에만 장애등급에 해당합니다.
- Q8. 2009.9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종전 규정에 의해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나요?
- 수술을 받은 시점이 2009년도라도 2010.1.1 이후에 장애인등록 절차를 시작했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 합니다.

○9. 지체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 관절부위의 강직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서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때와 관절의 불안정이 있을 때 등은 관절장애이며.

- 의사가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한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판정합니다.
- 마비로 근력이 저하되었을 때는 지체기능장애이며,
 - 근력 정도를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MRI 등(척수손상) 검사 자료로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감각 손실이나 통증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0.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2010.1.1부터 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한 수정바델지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으며, 2011.4.1부터는 뇌병변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정ㆍ시행 되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등급을 구분하는 수정바델지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장애등급별 수정바델지수 기준 완화 내용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1.3.31	24점 이하	25~39	40~54	55~69	70~84	85~94
'11.4.1∼	32점 이하	33~53	54~69	70~80	81~89	90~96

둘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수정바델지수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장애상태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토록 1~3급 장애 인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분	장애정도
1급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는 경우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는 경우
2급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급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Q11. 장애 재판정 대상자 및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라면 해당 장애인이 적정한 시점에 장애를 재판정 받아야 합니다.
- 장애를 재판정할 필요성과 시기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장애인에게 장애등급 결정 통지시 안내하며, 향후 재판정 시기에 재판정 통지를 합니다.

Q12.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에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 중 가장 중한 상태의 두가지 장애를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의거하여 합산합니다.
 - ※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한 중복합산 판정은 주장애, 부장애 두 가지 장애만 인정하며 그 외 장애는 유효한 장애로 인정하되 등급 합산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 ※ 중복장애 합산판정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3. 여러 가지 장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각각 별도의 장애로 인정할 수 없는(합산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여 중복장애 합산을 할 수 없다.
 -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란 두 눈, 두 귀, 같은 팔(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과 같은 다리(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관절)를 말함

014. 지체장애 중 뇌병변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 뇌병변장애인에게 뇌의 병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체장애가 뇌병변장애 부위와 다른 부위에 있다면 이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한 후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예) 우측 편마비인 뇌병변장애인이 다른 쪽(좌측) 팔을 상실한 경우 뇌병변장애와 지체절단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중복 합산
- 지체·뇌병변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을 판정하고, 지체장애를 별도장애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동일부위란 같은 팔 또는 같은 다리를 말함)
 - ※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합니다.
- Q15. 뇌병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편마비되었는데, 척추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합산할 수 있나요?
- 기존에 척추장애로 등록되었으며, 뇌병변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척추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각각 인정하고 두 가지 장애를 합산판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등록된 척추장애도 등급심사를 통해 중복합산 해야 됨을 유의

Q16. 언어장애를 지적·자폐·정신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지적·자폐·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해당되지 않으나 구 강구조의 이상(후두, 입술 등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이상)에 의한 언어 장애는 합산판정이 가능합니다.

- Q1.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여야 하나,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다시 심사받기를 원하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Q2. 장애등급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심사한 결과에도 승복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이의 신청은 한 번만 허용되며,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할 때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3.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의견진술제도] 가 무엇인가요?
-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장애 재판정 과정에서 공단의 장애심사 결과 장애등급 하락이 확인되면 공단이 심사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하기 전에 장애인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어 사전에 추 가자료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전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공단에서 확인심사를 하여 확인심사 결과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Q4. 사전의견진술제도는 왜 운영하나요?

○ 이의신청은 장애등급 변경처분 후에 이루어지는 바,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적절한 일시중단이 없도록 장애심사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Q5. 사전의견진술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공단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장애 재판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등급하락이 확인되면 지사를 통해 서면으로 안내하며,
 - 사전의견진술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지사에서 안내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의견진술에 의한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Q6. 사전의견진술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시군구의 장애등급 변경 등 처분 후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Q7. 사전의견진술 신청에 따라 다시 확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8. 사전의견진술 안내 대상자인 경우 장애등급 재결정일은 언제가 되나요?

- O 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한 사람은 **사전의견에 따른 확인심사 결정 통보 일**입니다.
- 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사전의견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입니다.

- Q9. 사전의견제출 안내 대상자인 경우 심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O **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의견제출일로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 O **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Q10. 결정보류된 건에 대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 첨부하면 다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자료를 보완하여 신규로 장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심사해서 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일을 결정합니다.
- 결정보류로 심사되었으나 치료기간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라서 장애심사를 실시하여 장애등급이 결정되면 장애인등록일은 최초 장애인등록 신청 시의 장애등급결정일로 합니다.
- Q11. 중복장애를 판정받은 사람이 한 가지 장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한 가지 장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Q12.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장애를 심사하나요?
- 이의신청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단순 적용으로는 장애 판정이 곤란하거나 장애의 개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하여 심층심사를 수행하고자 장애등급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자의 선정은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013.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심사대상 장애 관련 의학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6~8인으로 구성됩니다.

Q14.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도 하나요?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심사 건 중 장애인이 대면심사를 신청하고 공단이 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대면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Q15. 대면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장애인이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이 장애상태를 확인한 후 장애인은 퇴장하고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016. 대면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대면심사」를 받길 원하실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서에 해당 사항을 명기하시면, 공단에서 심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대면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Q17. 대면심사를 받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방법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공단에서 장애인에게 유선으로 일시 및 장소, 참석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V

구비서류 관련(42건)

〈구비서류 공통〉

- Q1. 기초·차상위 수급자, 일반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심사 등 경우별 장애심사 서류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심사서류는 장애유형이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복지급여 종류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Q2.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때에도 장애상태 검사 등을 모두 새로 해야 하나요?
- 기존의 검사결과지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반영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되,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없거나 장애상태가 변화된 경우에는 새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오래 전에 진료 받아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며, 의사가 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명기한 경우에는 동 진료기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 참조
- Q3.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예, 장애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도 필수구비서류에 해당합니다.
 - 단, 소견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뇌병변장애, 지체장애(관절, 기능, 척추)의 경우 장애진단서에 소견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자료상 장애정도와 일치함이 확인될 경우 소견서 없이 심사진행 하실수도 있습니다.

O4.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발급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 예, 발급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 결정 또는 보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발급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Q5. 장애등급심사 요청시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은?

○ 일반적으로 장애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하며, 장애유형(예, 절단장애)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

Q6. 진료기록지는 왜 제출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나요?

- 심장·간·호흡기·정신·간질장애 및 파킨슨병에 의한 장애는 장애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치료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외의 장애는 주로 치료경과 등 확인용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하면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 오래 전에 치료 받아 장애상태가 고착된 경우에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자료보존 기간 경과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존재한 경우
 - 2) 전문의가 장애진단서에 신청인의 장애상태가 고착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 3) 장애등급을 심사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경우

- Q7. 진료기록지라는 것이 무엇이며,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어느 진료기록지를 내야 하나요?
- 진료기록은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투약기록지, 간호 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환자를 진료한 기록입니다.
-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은 주로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 중 장애의 원인상병명, 치료기간·경과, 장애상태 등이 나타나 있는 주요부분과 입퇴원요약지입니다.
 - 심장·간·호흡기·정신·간질장애 및 파킨슨병에 의한 장애는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에는 특히 발병당시(약 1개월간)의 기록과 최근 6개월간의 기록지가 중요합니다.

Q8. 진료기록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진료기록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치료기간 및 경과에 따른 장애상태 등 객관적인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9. 심장·간·호흡기장애 검사결과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심장·간·호흡기장애는 진료 과정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므로 진료기록 상의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없는 경우 별도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Q10. 자료보완이 요구된 특정한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병원에서 어떻게 증명해주어야 하나요?
- 심장·간·호흡기·정신·간질장애와 파킨슨병에 의한 뇌병변장애는 반드시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는 장애 등급 결정이 보류됩니다.

- 그 외의 장애는 진료기록을 내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고, 의사가 장애 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진료기록 없이도 검사결과지와 소견서 등을 종합해서 심사합니다.
- Q11. 결정보류 되었던 사람이 다시 심사받고자 할 때 MRI 촬영 등 검사와 진단 등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MRI등 영상자료 검사결과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으면 기존의 촬영자료를 사용합니다.
- 다만, 장애진단서(소견서 포함)를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Q12.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등급 재판정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상의 법적 서식인 장애진단서가 필요하며, 일반진단서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013. 영상의학검사에 대해 판독소견이 있으면 영상자료는 없어도 되나요?
- 장애심사를 하는 의사들이 영상자료를 직접 보고 판독소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영상자료도 필요합니다.
- Q14. 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왜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내야하나요?
- 기존의 장애등록제도가 의사 1인의 진단과 소견으로 이루어졌으며, 판 정기준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루고자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에서 2인 이상의 장애유형별 전문의 등이 주치의사의 진단 및 소견내용과 함께 각종 검사결과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 합니다.
- Q15. 장애심사 과정에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보완이 요구되었을 때에 정해진 서식 외에 병원의 자체서식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016. 장애진단 받은 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예. 타 병원의 검사결과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 Q17.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할 때 원본대조필을 찍어야 하나요?
- 진료기록지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조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지체장애〉

- Q18.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X-Ray사진 등이 필요한가요?
- 소견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필요합니다.

〈뇌병변장애〉

- Q19. [뇌병변장애] 반드시 뇌병변장애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의사소견서로 심사받을 수는 없나요?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뇌병변장애 등급은 수정바델지수 검사 점수,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기타 이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서 판정해야 합니다.

- 일반소견서에 이러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견서 서식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20. [뇌병변장애] CT, MRI 등 영상 사진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 뇌경색, 뇌출혈 등 뇌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가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 ※ 뇌성마비 또는 파킨슨증후군에 의한 뇌병변장애는 MRI 등이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이미 촬영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

Q21.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에서 예전에 찍은 CT, MRI 등 뇌영상 사진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했을 때 새로 찍어야 하나요?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의사가 이학적 검사로 충분히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를 대신 해서 장애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일반사진이나 동영상 사진 등 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의사가 장애등급을 판단하기 위해 MRI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는 새로 찍어야 합니다.

Q22. [뇌병변장애] 요양원에 거주하며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 진료기록지를 대체할 수 있나요?

○ 발병 당시 기록지 및 퇴원 요약지와 함께 최근의 요양원기록지와 요양원 입소 당시의 기록지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023. [뇌병변장애] '발병 당시 진료기록지'란?

- 발병해서 입원한 날로부터 퇴원까지의 경과기록지를 말합니다.
 - 입원기간이 긴 경우 : 초진부터 1개월 정도의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 외래로 치료한 경우 : 1개월 정도의 외래진료 기록지임

Q24. [뇌병변장애] 진료기록지가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지가 필요한가요?

- 발병당시 입퇴원요약지, 간호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와 최근 6개월간의 경과기록지(재활, 의사, 간호기록 등) 및 입퇴원요약지가 필요합니다.
 - 뇌병변장애 등급 심사 시에 필요 없는 진료기록지인 약물처방기록지, 체온측정표, 혈액검사기록지, 체액량기록지, 뇌사진이 아닌 영상기록지는 제출하지 않음
- Q25. [뇌병변장애] 여러 재활병원에 입원 및 진료기록이 있을 때 진료기록은 어느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 발병 시 입원했던 병원에서의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와 가장 최근에 입원한 병원에서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 [뇌병변장애] 발병 시 A병원에서 2[~]3일 치료 후 B병원에서 두달간 입원 치료 후 7개월 동안 C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장애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어느 병원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 최근 통원치료 받은 C병원에서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으시고, CT, MRI 영상자료의 경우 어느 병원이나 가능하며, B병원 자료도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Q27.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서 1장에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진단을 함께 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지체·뇌병변·지적·언어장애를 모두 판정할 수 있으므로 한 장의 장애진단서에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 Q28. [시각장애] 전안부 사진과 칼라안저사진은 각각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 **전안부 사진** :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 **칼라 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Q29. [시각장애] 안구가 없는 경우에도 칼라 안저사진이 필요한가요?
 -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 등에 안구가 없음이 분명히 나타난 경우 진료기록만 제출합니다.
- 030. [시각장애]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는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하며, 각막 또는 수정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미미한데도, 시력이 낮게 나온 경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를 보충적으로 요구합니다.
- Q31. [시각장애] 병원에서 안저사진 등의 촬영이 안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 시력 저하의 원인이 망막 또는 시신경의 손상에 있을 때에는 장애등급 심사를 위한 검사결과지로 칼라안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동 사진의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Q32. [청각장애] 청력장애 장애등급심사 시에도 청성뇌간반응검사를 꼭 시행해야 하나?

○ 청각장애 등급심사를 받으려면 심사자료로 반드시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033. [청각장애] 이명도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 청력검사는 다소 양호한데,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 이명도 검사결과지로 이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지적장애〉

- Q34. [지적장애]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응 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 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요함.

035.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는?

-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 1급(지능지수 34 이하)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려면
 - 비언어적 검사(벤더게슈탈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 하여 추정지능지수를 산출
- Q36. [지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평가 시 임상심리보고서에 지능지수 등을 기재했는데도 평가항목을 같이 기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 장애심사센터의 전문의가 지능지수 등과 함께 보고서에 나타난 환자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심사하기 위합입니다.

- Q37. [지적장애] 선천적 지적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진료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경우도 6개월 치료 후에 진료기록을 갖추어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선천성의 정신지체는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임상심리평가보고서로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 뇌졸중이나 뇌손상 등으로 인한 지적장애는 가급적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 Q38. [정신장애] 정신장애 심사과정에서 진료기록지 보완이 요구되었는데,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병원이 폐업하면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이관하여 10년간 의무보관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 진료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꾸준히 진료 받지 않은 경우는 장애등급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Q39. [정신장애] 기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재판정 받을 때 최근 1년간 치료받지 않았음을 사유로 장애등급이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의 정신질환의 상태 및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등급 결정이 보류되고, 절차에 따라 복지카드를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자체(시장,군수, 구청장)와 유예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신장장애〉

040.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인 경우 의무기록지 제출은?

○ 투석치료를 받는 경우 장애진단서에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임과 '최초 투석일',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석치료중임'을 명시한 경우 의무 기록지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수

- 진단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1개월에 한번씩 만 3개월의 기록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41. [신장장애]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의무기록지를 몇 개월치를 내야 하나요?

○ 이식수술기록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호흡기장애〉

- Q42. [호흡기장애]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동맥혈가스검사 결과지가 모두 있어야하나요?
- 두가지 검사 결과 중 한가지만 있고, 한가지 검사 결과로 장애등급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가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VI $^{ extstyle 1}$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8건)

- Q1. 장애진단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 또는 장애 검사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 O2.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등록 또는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의 장애 진단서 발급비용
 - 지적·자폐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5천원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이 아님
- Q3. 장애 검사비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위해 재판정 받는 자 중 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며, 2014년부터는 의무 재판정 대상자도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장애를 재판정 받는 자
 - 예 :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
 - ※ 지원기준 이내에서 지원함

Q4. 장애 검사비용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수급자 :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예) 18만원 소요 시 10만원 지원, 8만원 소요 시 3만원 지원
- 차상위계층 :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예) 18만원 소요 시 8만원 지원, 8만원 소요 시 미지원
- 직권재판정 : 총 소요비용 중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예) 18만원 소요 시 10만원 지원, 8만원 소요 시 전액 지원

Q5.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 장애인이 공단의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자료보완 등 추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액(15만원) 이내 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1인에 대한 지원액은 추가진단비, 진료기록 직접확보 서비스 소요비용(수수료, 접수비, 착불수신료 등),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에 소요되는 이동지원실비를 모두 합하여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Q6.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 등급심사를 받을 때 CT, MRI 등 고가의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 뇌의 병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MRI 등 뇌사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전 촬영했던 뇌영상자료 사본을 제출하고, 무조건 새로이 촬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장애진단 시 의학적 진단 근거 등 으로 뇌영상을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뇌영상 촬영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장애 상태가 뚜렷하여 의사가 전문적 진 단에 의거 장애진단이 가능할 때에는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CT나 MRI 등 검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장애등급 심사 자료로 일반사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7. 공단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장애등록심사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안내 제공, 장애등록신청 접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 기타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Q8.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선정되면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장애등록 및 심사진행사항 안내 상담, 장애등록심사 접수 지원,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2007. 4. 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심사대상)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

※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 1,2급 장애인(3급 지적 · 자폐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2007년도 중증장애수당액 상향 조정(월 7만원 → 12~13만원)을 계기로 함

(장애심사위탁기관) 국민연금공단

2010. 1. 1 : 장애심사 대상 확대

(장애심사대상 확대) 1~3급 신규등록 · 장애등급 조정 · 장애 재판정대상자

2010. 5. 27: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법 제32조제6항)

2010. 7. 1 : 장애인연금법 시행

장애인연금 신청자에 대해 장애등급을 재심사(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하고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시행령 제16조제2항)하도록 규정

2011 4 1 : 장애등급심사대상 확대 및 판정절차 개선

(장애심사대상)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또는 장애를 재판정하는 모든 경우 (절차 개선) 의사가 장애 진단 후 공단에서 재심사 →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로 최종등급 결정(의사는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 미기재)

2013 1 27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등록 시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신설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 중 장애인 등록 신청자에 대해서는 등급 심사 실시

참고 3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

구	분	수 행 업 무 내 용				
시·군·구 (읍·면·동)		 ○ 장애인등록 신청서 접수 ○ 장애판정시기의 적정여부 등 확인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확인 ○ 장애인 심사요청 기본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기본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인에게 자료보완 요구) 				
		※ 장애등급 심사의뢰를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규정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장애등급심사 요청 ○ 공단지사로 서류 이송 ○ 직접진단 및 자료보완 협조 ○ 재청구심사 접수 및 심사 요청 ○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등급결정, 장애인등록 및 신청인에게 통지 				
공단	지사	 ○ 장애등급 심사요청 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등급심사관련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 공단 장애심사센터 및 권역별지역본부로 심사요청 ○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요구와 보완요청 통지 및 직접진단 ○ 직접진단 실시 ○ 시·군·구(읍·면·동)로 심사결과 통보 				
	장애 심사 센터 및 권역별지 역본부	○ 장애등급심사 및 등급판정 ○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요구 ○ 자문의사 관리 및 회의운영 ○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 이의신청 심사 업무 ○ 사군구(읍·면·동)에 심사결과 통보				

참고 4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기 관 별	수 행 업 무 내 용					
보건복지부	○ 법령·제도의 제·개정					
포신득//\	○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시·도	○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71.3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등급심사 의뢰					
	○ 장애심사결과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교부					
시·군·구	○ 복지대상자관리카드의 작성 및 유지					
(읍•면•동)	○ 신장·심장·간장애인 등의 이식자 장애등급조정					
(1 0)	○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장애진단	※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장애등급심사규정 제5조에					
기 관	따른서류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및 구비서류 송부					
	○ 심사구비서류, 장애등급심사 관련 사전상담					
국민연금공단	○ 장애등급심사(장애등급판정, 자료보완, 직접진단, 이의신청 등)					
수 한 언 급 중 단	○ 심사결정 관련 민원상담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협조)					

참고 5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본부	138-7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 (신천동) 국민연금본부회관	1355	-
장애심사센터	143-8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대한제지빌딩 6, 7층 국민연금공단 장애심 사센터	02-2175-2710~7	-
서울북부지역본부	120-70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9층	02-2176-9999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중구지사	100-70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빌딩 15층	02-397-9695	중구, 종로구
동대문중랑지사	130-8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6 경영빌딩 6층	02-920-0501~5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강북지사	142-7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14 삼성화재빌딩 6, 7층	02-901-2890	성북구, 강북구
도봉노원지사	132-722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502 KT노원지사빌딩 8층	02-2211-2900	도봉구, 노원구
성동광진지사	143-8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63 대한제지빌딩 3층	02-3408-6600, 4	성동구, 광진구
은평지사	122-75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42 한화생명빌딩 3층	02-350-5577~9	은평구
용산지사	140-80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59 고려빌딩3층	02-6220-2260	용산구
고양지사	410-7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프라자 3층	031-920-5430	고양시
파주지사	413-826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1 파주우체국 3층	031-956-3600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의정부지사	480-848	경기도의정부시 시민로62 삼성생명 2층	031-828-3701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철원지사	487-82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62 송우웰빙타운 5층	031-540-8012~3	포천시, 철원군
구리남양주지사	471-704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8 한화생명빌딩 14층	031-550-5731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강남신사지사 (서울남부지역본부)	135-8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국민연금강남사옥 2층	02-3416-6010~1	논현동,삼성동, 신사동, 청담동, 압구정동
강남역삼지사	135-73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KT선릉타워 4층	02-2186-4006~9	강남신사지사 관할구역 제외
송파지사	138-7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 17층	02-3433-5801~3	송파구
강동하남지사	134-841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1102, 8층 (성내동, 강동웨딩문화센터)	02-480-8910	강동구, 하남시
서초지사	137-88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13 엘타워 3층	02-3415-0372	서초구
관악동작지사	151-91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경동제약빌딩 4층	02-6934-2194~5	관악구, 동작구
구로금천지사	153-79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리더스타워 2층	02-2085-1400~4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지사	150-7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동양타워 5층	02-2629-2301~4	영등포구
강서지사	157-93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87 화인빌딩 5층	02-2086-7132~8	강서구
양천지사	158-88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9층	02-6345-9002	양천구
춘천지사	200-721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0 국민연금 춘천사옥	033-259-7711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홍천지사	250-805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4 KT홍천사옥 3층	1 1132-130-6/111	
강릉지사	210-944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224번길 12 국민연금 강릉사옥	033-640-9331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삼척지사	245-930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58 국민연금 삼척사옥 033-571-2190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원주지사	220-703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9층	033-749-8411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수원지사 (경인지역본부)	442-7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지 19, 국민연금수원사옥 3층,4층,9층	031-229-4001~4	수원시
용인지사	446-76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 스타월드(C동) 9층	031-288-1301~3	용인시
화성오산지사	445-360	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6 금강빌딩 5층	031-229-6001~3	화성시, 오산시
안양과천지사	431-8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호계 동) G.Square 20층	031-420-2002~3	동안구, 만안구, 과천시
군포의왕지사	435-802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404 대주빌딩 3층	031-390-8001	군포시, 의왕시
성남지사	463-9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4층	031-778-0302~4	성남시
경기광주지사	464-903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14-1 정민빌딩 2층	031-8026-3000	경기도 광주시
이천여주지사	467-800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하나빌딩 5층	031-630-7991	이천시, 여주시
평택안성지사	450-826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34 삼성생명 5층	031-659-0891~3	평택시, 안성시
안산지사	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삼성화재 안산사옥 2층	031-481-7790	안산시
광명지사	423-730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5 융창빌딩 3층	02-2610-2890~2	광명시
시흥지사	429-862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88 한국산업은행 5층	031-488-2729~30	시흥시
부천지사	422-84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32 대신증권빌딩 6층	032-610-2330	부천시
남동연수지사	405-8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20 국민연금 인천사옥 3층	032-451-0810	남동구, 연수구
서인천지사	404-834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84 새터빌딩 2층, 3층 032-560-0402~3,6		서구, 강화군, 김포시
남인천지사	402-724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51 한화생명 인천사옥 7층	032-770-3502~3	
부평계양지사	403-82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대한생명 부평사옥 15층	032-500-8102~3	부평구, 계양구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전지사 (대전지역본부)	302-713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국민연금 대전사옥 4층	042-480-4811~5	서구, 논산시, 계룡시
동대전지사	301-82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삼성생명빌딩 14층	042-720-4010~1	중구, 동구, 금산군
북대전지사	306-785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 우성빌딩 4층	042-670-1090	대덕구, 유성구
청주지사	360-76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2번길 20 국민연금 청주사옥 4층	043-251-5100	청주시, 청원군
증평지사	368-901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33 KT증평사옥 1층, 3층	043-820-7110, 7130, 7150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지사	373-805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96 하나로타워 3층	043-730-2730~5 043-730-2740~4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충주지사	380-707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242 국민연금 충주사옥	043-840-0771~2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공주지사	314-717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204 금성빌딩 1, 2층	041-850-3800, 3810, 3840	공주시, 부여군,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아산지사	330-74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국민연금 천안사옥	041-550-8903~7	천안시, 아산시
홍성지사	350-80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347 대왕빌딩 2층	041-630-8111~2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보령지사	355-935	충청남도 보령시 동현로27 041-930-6602,930- 국민연금 보령사옥 13,30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주지사 (광주지역본부)	506-72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 국민연금 광주사옥	062-958-2001~8	광주 서구,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동광주지사	501-025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아모레퍼시픽빌딩 8층	062-230-0780	광주 동구·남구, 화순군, 곡성군
북광주지사	500-86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80 송강빌딩 1, 2층	062-520-8101~2	광주 북구, 담양군,장성군
전주완주지사	560-7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국민연금 전주사옥 1, 3층	063-270-5303	전주시, 완주군
진안지사	567-80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66 홍삼한방센터 2층	063-430-3510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익산군산지사	570-040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12길 42 국민연금 익산사옥	063-850-0380~2	익산시, 군산시
정읍지사	580-80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97 국민연금 정읍사옥	063-530-5801~4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순창지사	590-010	전라북도 남원시 의총로 116 국민연금 남원사옥	063-620-3410~2	남원시, 순창군
순천지사	540-976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4 국민연금 순천사옥	061-729-3002~4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여수지사	550-020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북2길 24 국민연금 여수사옥	061-660-5581	여수시
목포지사	530-711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KT목포사옥 6층	061-240-3330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해남지사	536-809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 교육청길16-16 국민 연금 해남사옥	061-530-2310	해남군, 완도군,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제주지사	690-7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3길 11-1 국 민연금 제주사옥	064-720-4001~2 064-720-4004~5	제주시, 서귀포시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대구지사 (대구지역본부)	704-7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국민연금 대구사옥 2층	053-589-4501~13	달서구,
서대구지사	702-704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41 KT북대구지점 1, 2층	053-380-3011~2	서구, 북구
동대구지사	701-700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 동대구우체국 5층	053-430-7850	동구
대구수성지사	706-8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LIG손해보험 대구사옥 11층	053-750-9191	수성구, 중구, 경산시, 청도군
대구남구달성지사	705-791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우체국보험 대구사옥 6층	$ 1063 - 1101 - 1511 \sim 7$	
경주영천지사	780-947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KT경주지점 4층	5 054-770-3901~3	
포항지사	790-8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KT포항지사 8층	054-280-0801~3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안동지사	760-714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211 국민연금 안동사옥	054-850-9010~1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영주봉화지사	750-909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2 [~] 4층(영주동)	054-639-8000~8 054-639-8011~15	영주시, 봉화군
문경지사	745-703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45 국민연금 문경사옥	054-550-3301~2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구미지사	730-090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5 신한금융투자증권 2층	054-450-8501~4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김천성주지사	740-978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137 김천상공회의소 3층	054-420-1610	김천시, 성주군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부산지사 (부산지역본부)	611-7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 부산사옥 4층	051-797-7091~3	부산진구, 연제구
중부산지사	600-737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7 교보생명보험 중앙동사옥 3층	051-660-3200	중구, 동구, 영도구
서부산지사	604-747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삼성전자빌딩 10층	051-290-3511~2	사하구, 서구
북부산지사	616-816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 12 이수타워 4층	051-603-1280~4	강서구, 사상구, 북구
동래금정지사	607-714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90 대한생명 8층	051-550-7504	동래구, 금정구
남부산지사	608-80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	051-610-6308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남울산지사	680-72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빌딩 4층	052-226-2100	남구, 울주군
동울산지사	681-200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41 울산방송(UBC)빌딩 1, 2층	052-290-6100	중구, 동구, 북구
창원지사	641-7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국민연금 창원사옥 1, 4층	055-278-9001~2	진해구, 의창구, 성산구, 창녕군
마산지사	630-71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대한생명빌딩 11층	055-290-4601~5	마산 합포구, 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김해밀양지사	621-781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부원동우체국 4층	055-320-8311~4	김해시, 밀양시
통영지사	650-82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16 국민연금 통영사옥	055-650-8503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지사	660-720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73 알리안츠생명빌딩 2, 3층	055-760-0699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사천남해지사	664-952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3길 44 신명빌딩 2,3층	055-830-0811~5	사천시, 남해군
거창지사	670-80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56 국민연금 거창사옥 055-940-4510~5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양산지사	626-815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 양산사옥	055-371-1510~2	양산시

참고 6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구분	장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상지절단	0	0	0	0	0	0
		하지절단	0	0	0	0	0	0
		상지관절	0	0	0	0	0	0
1	지체장애	하지관절	0	0	0	0	0	0
1	기계경계	상지기능	0	0	0	0	0	0
		하지기능	0	0	0	0	0	
		척추장애		0	0	0	0	0
		변형장애					0	0
2	뇌병변장애		0	0	0	0	0	0
3	시각장애		0	0	0	0	0	0
4	청각장애 청각장애	청력		0	0	0	0	0
4	10.40.41	평형			0	0	0	
5	언어장애				0	0		
6	신장장애			0			0	
7	심장장애		0	0	0		0	
8	호흡기장애		0	0	0		0	
9	간장애		0	0	0		0	
10	안면장애			0	0	0	0	
11	장루·요루장애			0	0	0	0	
12	간질장애			0	0	0	0	
13	지적장애		0	0	0			
14	자폐성장애		0	0	0			
15	정신장애		0	0	0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 (2011-34)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등급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칙 제2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 2.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기존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가. 규칙 제6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 나. 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 다.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재판정 심사 대상 장애인
 - 3.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 ·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 제5조(적용대상) 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서류제출)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 ②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은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2항의 관련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의뢰) 제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 및 안내) ①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 ②공단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의뢰한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심층안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실시) ①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②심사대상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심사 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 ⑤심사는 공단(장애심사센터)에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 제10조(심사방법) ①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 ②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 제11조(사전 의견진술) ①장애등급 심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기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아 이전의 심사에 참여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를 의견진술 심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1.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심사결과 기존 장애등급과 다르게 조정되어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2.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사전 의견진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1.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등급 심사결과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의 1급 부터 6급에 해당하는 경우
-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는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장애등급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 4. "장애등급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5. "심사반려"는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의신청 등) ①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②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④공단은 제9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의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 ⑤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제12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⑥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4조(장애등급심사위원회) ①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1.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 2. 장애등급 판정시 개인의 신체적 · 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 3.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 ③위원회는 공단에 설치하고 4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회의 회의는 제출된 심사건에 따라 위원 중 5~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 한다.
- ⑤ 위원장은 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장애심사센터장)으로 한다.
- ⑥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대면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또한 대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직접 참석시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 ⑦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편의제공)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은 중증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심사서류 확보 및 차량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6조(기타사항)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등급판정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장애진단서와 X-rav사진(절단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 (2) 관절장애
 - 장애진단서와 관절장애 참고서식(해당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 필요한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 (3) 지체기능장애
 - ① 상지, 하지 기능장애
 - 장애진단서와 지체기능장애 참고서식(해당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도수근력검사,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 ② 척추장애
 - 장애진단서와 척추장애 참고서식(해당 고정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 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척추운동가능범위를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확인)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 (4)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진단서와 X-ray사진(다리 단축, 척추 만곡 각도 등 확인)등의 영상의 학검사를 제출한다.

2. 뇌병변 장애

- 장애진단서와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제출한다.
 - 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수정바델지수 점수 등을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영상의학검사(CT, MRI 등)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마비의 부위, 중증정도 등)를 제출 하다.

3. 시각장애

- 장애진단서와 시각장애 참고서식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전안부 사진, 그 외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 등)를 제출한다.

4. 청각장애

- (1) 청력장애
 - 장애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필요한 경우 이명도 검사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를 제출한다.
- (2) 평형장애
 - 장애진단서(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보행에 대한 구체적 소견)를 제출 한다
 - 검사결과는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보행 상태 등)를 제출한다.

5. 언어장애

○ 장애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언어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시행하여 제출한다.
 - 유창성 장애(말더듬) : 말더듬 심도 검사
 - 조음장애: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 언어능력
 -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 검사
 - *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 · 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슨턴 구문선별검사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6. 지적장애

- 장애진단서(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모두 확인)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사회성숙도 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7. 정신장애

- 장애진단서(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GAF 척도 점수, 능력장애 상태 등)를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를 제출 한다.

8. 자폐성장애

- 장애진단서(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 점수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또는 발달지수검사, 필요시 자폐성 척도검사(K-CARS 등)를 제출한다.
- 충분한 치료 시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9. 신장장애

- 장애진단서(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임을 확인)를 제출한다.
- 장애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0. 심장장애

- 장애진단서와 심장장애 참고서식(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사진, 심전도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임상소견 등)를 제출한다.

11.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서(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환기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흉부 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기록 포함)를 제출 한다.

12. 간장애

- 장애진단서(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합병증 유무)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간 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를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를 제출한다.

13. 안면장애

- 장애진단서(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부위)를 제출한다.
- 필요한 경우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
- 치료시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4. 장루 · 요루장애

- 장애진단서(장루 · 요루 종류 등)를 제출한다.
- 진료기록지(장루 · 요루 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피부의 헐은 정도 등)를 제출한다.

15. 간질장애

- 장애진단서(발작의 종류, 발작 시 유발되는 증상, 발생빈도 등)를 제출한다.
-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발작의 종류, 발생 빈도, 적극적인 치료내용 등)를 제출한다.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와 절단장애의 경우에는 기존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1-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 · 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진료기록지

- 절단장애와 변형장애의 경우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관절, 척추, 기능장애의 경우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X-ray사진,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 약〉

장애	유형	검사 결과		
	절단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 절단부위 확인	미제출	
	관절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 해당 관절운동범위 측정치 확인	제출	
지체 장애	척추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 척추운동범위측정치확인(강직성척추염)	제출	
	변형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 다리단축, 척추만곡각도 확인	미제출	
	기능	도수근력검사, 필요시 X-RAY사진 및 근전도검사(기존검사 제출가능)	제출	

1-4. 유형별 특례

- 몸통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등의 경우는 원인질환을 확인하고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기재된 새로운 장애진단서에 척추고정부위,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장애유형별(척추장애, 뇌병변장애 등)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이 경우 가능한 기존의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며 보존기한의 경과 (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 몸통장애>

○ 몸통장애 : 팔, 다리의 기능장애 이외에 척추의 병변 등으로 거동 능력이 제한된 상태('88~'99 당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되었으며 현재는 폐지)

	1급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몸통	2급1호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로 10분 이상 있기가 곤란한 사람
장애 등급	2급2호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기준	3급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보행이 곤란한 사람(100미터 이상 보행이 곤란한 사람)
	5급	몸통의 기능장애로 500미터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

2. 뇌병변장애

2-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기된 재판정 기한(예: 6개월 후 재판정, 1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 · 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이 경우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명확히 기재된 새로운 장애 진단서에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 (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ㆍ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기재된 명확히 기재된 새로운 장애 진단서에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

장애유형	관 련 검 사	진료기록지 제출여부
뇌병변장애	- CT, MRI 검사 등(기존검사 제출가능) * 뇌성마비, 파킨슨병은 뇌영상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제출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3-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기된 재판정 기한(예: 2년후 재판정, 3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 장애진단 시의 검사자료(5년 이내)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나 의료기관 휴 · 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장애의 경우 기존 검사결과에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 중 지능지수 점수만 있는 경우 사회성숙도 검사 없이 기존 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 (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ㆍ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웩슬러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K-WAB 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 약〉

장애유형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제출여부
지적장애	- 임상심리평가 (웩슬러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가능시
자폐성장애	- 웩슬러지능검사, 필요시 자폐성척도(K-CARS검사 등)	가능시
언어장애	- K-WAB 검사 등	가능시

4. 내부장애, 정신장애

4-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 (소아청소년)간질장애의 경우는 1년 이내, 장루 · 요루장애와 (성인)간질장애의 경우는 2년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결과

-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의 경우 1년 이내에 검사 받은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없이 장애진단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3. 진료기록지

-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장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 약〉

장애유형 (기존진단서 인정기간)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제출여부
심장장애 (1년)	- 운동부하, 심초음파, 심전도, X-RAY * 진료기록지상 심장수술병력, 입원병력 및 중증도 등 확인	제출
호흡기장애 (1년)	- 흉부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가스검사 * 진료기록지상 적극적 치료여부, 중증정도 등 확인	제출
간장애 (1년)	- 혈액검사 * 진료기록지상 복수, 복막염, 간성뇌증 등의 병력 및 상태 확인	제출
신장장애 (1년)	* 진료기록지상 3개월 이상 투석중 임을 확인	가능시
정신장애 (1년)	* 진료기록지상 지속적인 치료여부, 정신질환의 상태, 능력장애상태 등 확인	제출
장루 - 요루장애 (2년)	* 진료기록지상 장루·요루 확인 및 장루의 변형이나 현저히 헐은 정도 확인	가능시
간질장애(2년) *소아청소년간질 (1년)	* 진료기록지상 적극적 치료여부, 간질의 유형 및 발생빈도 등 확인	제출

5. 시각장애, 청각장애

5-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5-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나 의료기관 휴 · 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 · 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망막사진, 시유발전위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1~3급의 경우)

〈요 약〉

장애	유형	검사 결과			
시각	-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 전안부 사진 -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 : 칼라안저사진(검사결과지상의 눈의 상태와 교정시력 측정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필요) - 시야장애의 경우 : 시야검사(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제출		
청각	청력 장애	[- 우음성터걸사(3이) 되가유막마음걸사(1이)			
장애 평형 장애		- 온도안진검사, 회전의자검사 등	제출		

6. 안면장애

6-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6-2. 검사결과

○ 안면장애의 경우 검사결과 없이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의 사진을 첨부한다.



제3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3-2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3-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3-4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 3-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3-6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 3-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3-8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 3-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3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4 지원내용

구분	의로	로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제1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의원	, 보건의료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제2차	제17조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외래	의료 급여	만성질환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기관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	상위 14%)	전액
0101	제	1 · 2 · 3차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	상위 14%)	전액
입원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 식대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0	세서 의약품을	처방조제	500원	МО
극도	조자	베하는 경우	직접조제	900원	없음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포함)

	보장구 분류 및 유형	전문과목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수동휠체어	재활의학과, 정	병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그 밖의 보장구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1 201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20-1-1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 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	병형외과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함

5 지원 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시·군·구의 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의료비 심사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대상 여부(장애여부 및 의료급여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여부 등)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한다.
- 해당 시·군·구 담당자는 지급 결정된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의료비를 의료 기관에 지급한다. 지급일자는 의료기관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6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급여비용 청구방법(의료급여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 관련)

- 장애인 의료비 청구는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에서 정한 의료 급여비용 청구방법과 같다.
- 「의료급여비용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 (사본)는 의료급여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심사평가원에 청구용으로 제출 ※ 단, 장애인용 보장구 비용 청구시 기준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청구

나.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다.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의 착오 청구에 의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급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상의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 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 다만, 의료급여법상의 소멸시효(3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 차상위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丑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장 애 인 의 지 원 대 상 자			명 (관내	의료급	여2종 및	차상위	위본인부	담경감	장애인	수)
			보조사	업의 경	불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	요액	국고보조액	지병	방비부담역	백	자부'	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0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실적

1.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시군구	합계		고 합계 의료급여기관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AL I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건)

			(ピロ・ピ)
시·군·구명	Л	의료급여기관 진료건수	보장구 지원건수
계			

─ 3-2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및 목 적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5조

③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참고) 2014년도 소득기준 범위

구분				내	용			
十 正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 득 인정액	(월/원)	784,424 원 이하	1,335,642 원 이하	1,727,853 원 이하	2,120,066 원 이하	2,512,279 원 이하	2,904,490 원 이하	3,296,703 원 이하

나. 조사 방법

-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 방법 등은 〈2014년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선정기준 적용. 단,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수급여부를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다.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15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 단, 세부 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지원제외 항목 모두 적용)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2014년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

구 분	입학금 ·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비고
초등학교**	X	X	X	0	의무교육
중 학 교	X	X	0	0	의무교육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포함)
고등학교	0	0	0	× (교과서대 포함)	

- *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면제
- ** 초등학생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으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면제

가.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

○ 지원내용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 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워대상 : 고등학생

※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는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129,500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초· 중·고등학교 특수장애 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38,700원 지급(연1회)
- 학년 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 시 동시 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52,600원 지급(1학기 26,300원, 2학기 26,300원으로 연2회)
- 학기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1/4분기, 2/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 신청일이 3/4분기, 4/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5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 실업계·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6 지원절차

가. 교육비의 신청

-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지원 신청자는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수업료납입고지서 (사본)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 서식)및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기존대상 및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신청 불필요.
- 교육비 지원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나. 교육비의 지급 방법

- 학비는 분기별로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로 직접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학비는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시장·군수·구청장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하여 지급
 -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등 납입기한이 재학생보다 이른 점을 감안, 신속히 입학학교와 학비 고지 금액을 파악하여 기한내에 학비를 지급할 것
 - 시·군·구청장은 학비 지급 전에 해당 학교로부터 당해 수급자의 재학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재학여부 및 전 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연도 중에 새로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분기의 가운데 달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급여신청 월이 속하는 분기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3분의 2를 지급)

다.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지원 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 교육비 지원대상 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지원한 분기의 다음 분기 부터 전입지에서 지원함. 다만,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7 행정사항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할당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초과하여 예산을 신청 할 수 없다.
 -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전입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전출지에 할당된 인원을 감한다.

나. 지급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상반 기분은 7월 1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 까지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 이 지침에 의한 분기는 다음과 같다.
 - 1분기는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 2분기는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3분기는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 4분기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

(단위 : 원)

																		(L	2 T I	· 전)
				학	학	급	장	الم					지원	내역			분:	기별	확인	l란
일	부양자	학생	주	=	7		밴 유	예	은	계	입	수	₌₌	부	한					
回면 번 여				교	년	지	형	금	행	계 좌 번 호	학		과	교	용	계	1 / /	2/1	3/1	4/4
호	성 명	성명	소	명	반	별	장 하 아 등이 맛 내이기의	주	명	臺	금	료	교 사 대	부 교 재 비	학용품비	711	174	2/4	0/4	4/4
					_		급	-				т.	네	미	미					
_																				

※ B4 사이즈(255mm×365mm)횡으로 인쇄 후 사용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분기 교육비 지원대상자 학적변동 조회서

학교명 :

성 명	계 열	학년/반	학적변동사항 (변동내용*) 및 일자)	전 분기 학비 납입여부	비고

*) 재학, 휴학, 자퇴, 퇴학, 기타 학적변동내용 기재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단 을 알려드리니, 상기 학생의 학적변동 및 전 분기 학비 납입여부를 확인하여 우리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 () 학교장 (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_ ¬				- 0	^1					
기 관	명					대	丑	자					
소 재	지												
사 업 저	세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으	내용												
1) 예산현황	보조사업의 경비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	 2액	국고	 1보조액	지방	비부담	액		부담	액) 기	타
		•	•	<u> </u>			•	<u> </u>		<u> </u>		<u> </u>	<u> </u>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 지원대상지	하 현황											(단우	: 명)
 계	_호 (입학금	<u> </u>	vi — /	교과서	H CH	부	교재	НΙ		2	학용	품비	
711	(입학금	및 수업	길료) 	<u> </u>	1-11	1 -			3	등학생		고등	학생
장애인!	복지법 제3& 국고보조금				및 관리	비에 관	한	법률 >	ષી16≟	조 규	정에	의거	
						년	월	!	일				
	신청기	다 (기곤	반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반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	배정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인원수)

(단위 : 명)

		비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	재비	학용품비		
시군구	입학금(A) 수업료(B)		입학금(A) 수업료(B) (C)		중학생 (E)	중학생 (F)	고등학생 (G)	

3. 지원 실적 (금액)

(단위 : 천원)

	계	학 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	.재비	학용품비		
시군구	71	입학금 (A)	수업료(B)	(C)	초등학생 (D)	중학생 (E)	중학생 (F)	고등학생 (G)	

- 3-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및 목 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③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2014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월소득 인정액 기준	1,810,209원 이하	3,082,251원 이하	3,987,354원 이하	4,892,460원 이하	5,797,566원 이하	6,702,669원 이하	7,619,775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905,106원씩 증가				

- ※ 소득인정액은 『2014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 자립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나.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다. 대여조건

○ 융자 조건

융 자 조	<u>.</u>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 연간소득 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라.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 대여를 제한하되,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 받는 경우 또는 대여목적이 창업(기존운영자금 포함)외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대여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마.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4년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바.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사.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 비용 추가 지원 가능)
-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5) 자기개발 훈련비
- 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7) 기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 장애인근로자 경우 1), 2)항목 제외
 -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4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가. 대여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기타지역: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 나.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5 대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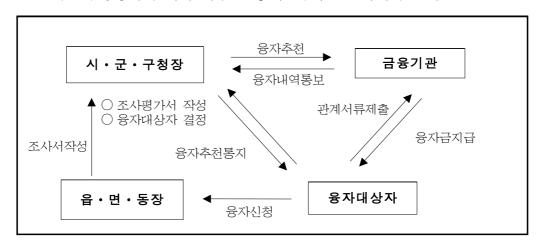
○ (신청)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소득・재산 신고서」(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1호의2 서식)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한다. (2011.9.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접수 및 기초조사)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및 대여자금의 반환가능성을 고려하여 별첨 조사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 받은 서류와 함께 시·군·구로 송부한다.
- (요건심사 및 추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재산 조사 및 사업계획서와 별첨 조사서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추천한다. 이 때 자립전망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 * 소득 재산조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담당하고 대상자 결정은 사업과에서 수행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 자금대여 추천통지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 첨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 신청자에게는 「복지 대상자 자금대여 추천통지서」를 지체없이 통보한다. 아울러 대여 대상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추천대상자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에 철저 입력. 향후 금융기관 대여 결정 및 불가 대상 여부도 입력하여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주의 사항〉

- 시·군·구에서 동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 추천 대상자의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 요망

○ (대출요건 심사 및 융자 결정)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사유 등)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가. 자금 운용

- 시·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 내에서 운영
- 자립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03. 4월~)
 - 보건복지부는 자립자금융자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차보전료(금리차이)를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며
 - 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손실보전금과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

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계획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 최초 점검하고, 6개월 경과 후부터 연 1회 이상 점검
- 금융기관은 분기말 기준 대여자의 상환 및 대손처리 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다음 분기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연 1회이상 시·도를 통하여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 관리 카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여 상환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매년 1월 20일까지 대여대상자 사업유지현황(최근 3년간 대여대상자)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업무의 협조

- 융자 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재지(사업장)가 상이하고, 원거리인 경우 융자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한다.
- 이 경우 신청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신청자의 사업장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확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의뢰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반환명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을 융자받은 자로 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 창업 후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위의 규정을 준용함. (단, 매출 및 이익발생 부진으로 사업을 유지함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입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는 제외)

마. 전출입 관리

- 대여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주소지 특별자치도지사·시·군· 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를 즉시 송부하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함
 -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융자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바. 대여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자립자금 대여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자립자금대여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매월 말 현재로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공통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복지대상	자 자금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보호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유무 🛛 해당	□ 제외					
エヌナモ	□ 한부모가족지원 [□ 장애인복지 □ 기타 저소득층						
융자액	□ 일금 원							
	□ 생업자금	□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건설업 □기타()						
자금종류 및 용도	ㅁ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기술훈련자금 □ 장애인보조기구구입 □생업용 자동차구입자금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계발훈련비 □의료비 □기타(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지금 융자	ㅁ 자동차구입자금(장애인근로자)						
사업계획서		뒷면에 작성						
통지방법	ロ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복지대싱 동의합니다		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추	소됨을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역자활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 신청서 뒷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 면]

	Z	가금 대 여	사업	계획서			
창업(구입) 형태1)	□ 개인 □ 자활공	동체 🏻	기타()			
사업명							
			업 장	ㅁ 있음	(m²)	
사	□신규사업	위	치				
•	│ □ 기존사업투자			ㅁ전세			원
업	U기본사업무사 	임다	내용	□월세			원
내	□업종변경		1 110	□기타			원
용	│ │ □ 자동차구입			ㅁ보증금	<u> </u>	1-111 6	원
	니시중시구입 	차링	 내용	ㅁ신차	-1	년식, 원 년식, 원	
				ㅁ중고쳐	<u> </u>		<u> </u>
		자영업				자영업	
기	· 현 재	근로자		가장 오린		근로자	
술 보	종사직종	기 타		기간 동인 종사한 작		기 타	
유		경력	년	!		경 력	년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ㅁ있음ㅁ	없음	종	₽ F		
	일 정			! (창업준비	/자금사	용내역 등	+)
사 업 일 정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총사업소요자금		원				-월별 ()
사업자금	신청융자금액		원	예 상 소 요		예상	
운 용	부족자금 확보	ㅁ확보ㅁ	미확보	경비내역		매출액	- 년매출액 ()
기술 - 경영지 도 계획	□ 지역자활센터장 □ 소상공인지원센E □ 직업훈련기관 □기타()	:		E 받고 은 내용		,	

- 1) 창업형태는 담당자가 기재하십시오. 2) 사업일정란 기재요령 [신청자]
- •조건부수급자 생업자금융자금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은 월별 세부계획 기재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경우 월별 계획은 기재하지 않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공통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복지	대상자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단 ,장애인자동차 구입				
		. —		-		사동자 구입 개월간)
융 자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8 4 4	주 소					
융자기관명					전화번호	

귀하를 자금대여 대상자로 추천하고 위 융자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니 아래 구 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자금대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문의전화번호 :

귀하

(1) 본인 및 구비 ② 본인 및 서류 확인)

- 아래 ①, ② 중 택 1

①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② 본인 및 보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명세표(소속기관장확인)

기타 구비서류 및 연대보증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금 대여 추천통지와는 별개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추천통보서는 공문시행으로 갈음.

[별지 제1호 서식]

조 사 서

대 여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대어신정인 	주	소						
대여자금종류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								
대여자금의 반환가능성								
구체적 지도계획								
T U.T. 0174	결	고	L	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		
조사자 의견	사	9	1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조	사 자	소 속	Ì	직 급	성 명 (인)		
특별자치도지	사ㆍ시	장 · 균	1 수 ·	구청장 귀하				
1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 및 융자(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장애유형 및 등급, 소득재산 등			
고유식별 정보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 및 융자(관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융자취급 금융기관, 사회복통합망 시스템(대여사업관리, 소득재산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이용목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등급, 소득 및 재산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정보의 이용을 거부 요구할 수 있습니	하고자 할 때에는			않으며, 제공된 개인 해 열람, 정정, 삭제를
※ 만 14세 미만 아동	등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	비인의 동의가 필	요함
「개인정보보호법」 수집 및 활용에 등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	[!] 를 확인하였습니다	라.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 상기 본인은 위와 같0			용에 동의하고 위	□ 확인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월	용에 동의하고 위 일 (서명 또는 인)	□ 확인하지 않음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 □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

(단위 : 명, 천원)

	11		대여	신청	대여	추천	금융 대	·기관 출	<u>-</u>	금융기관	미대출		대출
시도	시 군 구	성별	인원	금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진	행중	대출 결	·불가 정	대출 불가 주요 사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7111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월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실적 □ 장애인근로자자동차 구입자금

ㅇㅇ 은행

○ 금월 배정액 : 천원 (배정일자 : . .)

○ 배정액 누계 : 천원 ○ 미대출 잔액 : 천원

(단위 : 천원)

시	14	대 출 실 적										
도	성 별	계		무보증		보증		담보				
별	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남											
누계	여											
	계											
	남											
당월 합계	여											
	계											
서	울											
부	.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별지 제5호 서식]

□ 장애인자립자금
□ 장애인근로자자동차 구입자금
(20 년 /4분기말 기준)

ㅇㅇ 은행

 ○ 전분기까지 대출잔액 :
 건
 원

 ○ /4분기 대출상환액 :
 건
 원

 ○ /4분기 추가대출액 :
 건
 원

(단위 : 원)

시도	시군구	대출시행	이름	생년	성	대출일	대출	전분기까 지		분기 한액	대 손
		사업소명		월일	별		금액	대출잔액	원금	이자	처리액

- 3-4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목 적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 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③ 대여 기준

가. 대여 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국가유공자 포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 하게 지원 가능

나. 대여조건

○ 융자 규모 및 조건

0 TL 7 II	융 자 조	건	
융자규모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45억원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u>고정금리</u> <u>연 3.0%</u>	5년 균등 분할 상환

-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융자 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 **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 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 보유자 등

○ 제출 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상 이등급자에 한함)
 - *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다.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범위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라.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 유의사항: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 예) 대여금 대출일(5.20) → 최초 원금 상환일(6.30)
 -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마.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4 융자기관 및 재원 등

가. 융자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7대 도시지역 외 지역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나. 융자 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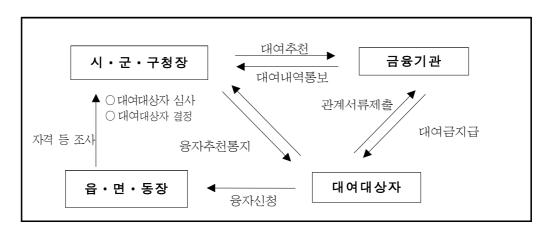
5 대여절차

○ (신청 및 접수)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대여신청자의 장애인근로자 유무를 확인한 후에 신청서 및 제반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대상 자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대여 신 청자에게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추천통지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5호 서식)를 지체 없이 통보한다.
- 아울러 대여 대상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통 지하여야 한다.

〈 주의 사항 〉

- 시·군·구에서 동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 추천 대상자의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 요망
- (대출심사 및 융자 결정)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상환기간, 상환 방법, 대여 불가사유 등)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가. 자금 운용

- 시·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내에서 운영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대여 이차보전('10년 상반기 ~)
 - 보건복지부는 자동차구입자금 융자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차 보전료 (금리차이)와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

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추천자가 대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제출받아야 한다.
 - 이때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구입여부 확인 시 지급받은 대여금과 자동차 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대조하여, 대여금 보다 자동차 구입가격이 더 낮아 차액이 발생한 경우 대여결 정자가 즉시 그 차액을 융자기관의 해당 지점에 반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울러,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금 지급 1년이 지난 후 연 1회이상 시·군·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해 자동차 등록 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은 분기말 기준 대여자의 상환 및 대손처리 현황<u>(장애인자립자</u> 금 별지 제5호 서식)을 다음 분기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연 1회이상 시·도를 통하여 시·군·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관리 카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여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차량이용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대여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에는 대여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대여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융자기관의 해당지점 및 대여결정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취소결정 대상자가 대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군·구에서는 대여금 전액을 즉시 융자기관에 상화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라. 전출입 관리

- 대여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거주지 특별자치도지사·시· 군·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를 즉시 송부하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함
 -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대여 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마. 대여실적

- 시·도지사 :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실적(장애인자립자금 별지 제3호 서식) 을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 : 시·도지사에게 해당 금융기관(지점)에서 통보된 대출내역 (대출자, 대출금액 등)을 매 발생 해당 월 익월 <u>10일</u>까지 보고

- 융자기관(취급 금융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실적(장애인자립자금 별지 제4호 서식)을 매 발생 해당 월 익월 15일까지 보고
 - 융자기관은 해당지역 지점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 지점에 통보된 "금융 기관 자금대여 추천자"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추천 시·군·구청장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공통서식 별지 제4	4오 서식]	
-------------	--------	--

[앞면]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즈미드로버증	1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	[호							
	주 소									
보호구분 보호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	· · - · · · - · · · · ·	당 🗆 제외							
		당애인복지 🗆 기타 저소득층								
융자액	□ 일금 원									
	□ 생업자금	□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건설업 □기타()	□ 농업 □ 광공업							
자금종류 및 용도	□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기술훈련자금 □ 장애인보조기구구입 □자동차구입자금 □ 사무보조기기 구입 □자기계발훈련비 □의료비 □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융자 □ 자동차구입자금(장애인근로자)									
사업계획서		뒷면에 작성								
통지방법	ㅁ 전자우편(E-mail) ㅁ	문자메시지서비스(SMS) ロ 서면 ロ 기타()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 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통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추천 통지서					유효기간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2개월간	
융 자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융자기관명					전화번호	

귀하를 자금대여 대상자로 추천하고 위 융자금융기관에 추천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자금대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융 자된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문의전화번호 :

귀하

구비 서류

※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금대여 추천통지와는 별개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 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추천통보서는 공문시행으로 갈음.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대여 추천 및 융자(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장애유형 및 등급 등
고유식별 정보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대여 추천 및 융자(관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용자취급 금융기관, 사회복통합망 시스템(대여사업 관리 업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이용목적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관리)에 관한 사무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등급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형	<u>+ </u>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한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기	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	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3-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및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 (1)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 각·청각·심장 장애인
-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 나.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장애인보조기구 품목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개정으로 품목 세분화)
-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04 33 06)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3) 음성유도장치(12 39 09) : 시각장애인
 -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 (4) 음성시계(22 27 12): 시각장애인
-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 : 청각장애인

- (6) 진동시계(22 27 12): 청각장애인
- (7)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 장애인 1~2급 중 보행 보조차 및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8)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 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9)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10)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11) 접시 및 그릇(15 09 18):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12) 음식 보호대(15 09 21)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 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13) 기립훈련기(04 48 08):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14)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 (15)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 (16)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2 30 03) : 시각장애인
- (17) 목욕의자 (09 33 03) : 1~2급의 지체 뇌병변 장애인
- (18)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 시각장애인

다. 교부 우선 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4) 재가장애인
-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라. 교부 제한

- (1) 2013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③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절차

가. 신 청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u>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u> 제1호 서식¹⁾에 의한「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

나.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검 진(필요한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진단의뢰서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를 결정

라. 상담 및 평가(해당 기관이 있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참고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평가를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교부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¹⁾ 제1장 장애인등록 관련 서식(11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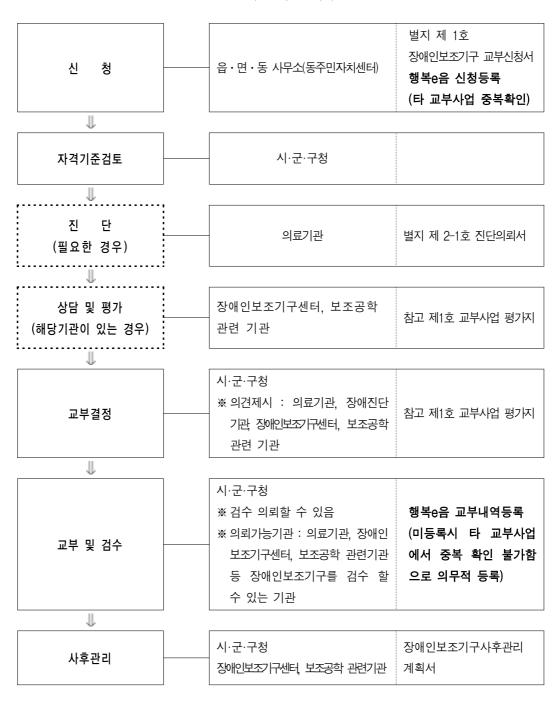
바. 교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수리)의뢰서』를 교부
-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함.
-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를 의뢰받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품목을 검수해야한다. 검수는 아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 의뢰가능 기관 :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장애인보조 기구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사. 교부비용 청구

-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장애인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처방대로 장애인보조기구가 제조 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 교부절차 〉



4 장애인보조기구 구매시 유의사항

- 가. 국내의 장애인보조기구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능 한 한 국산품을 구매·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품목은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사업에서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을 이용하도록 함
 - ※ 업소 및 품목에 대한 정보안내서는 별도 통보
- 다. 교부 예정인 장애인보조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계약 체결
- (1)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기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작성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시각신호표시기의 경우 가능하면 방문하여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 (2) 음성유도장치. 기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
 -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자 또는 텍스트 등 시각장애인용 사용설명서를 제공
 - 시각장애인이 기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직접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 음성유도장치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와 공공기관 등에 설치 되어있는 음성안내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세기, 감도, 주파수, 프로토콜 등을 고려하여 선택
- (3) 기타 사후관리 보장 등 장애인 입장에서 업체 선정
 - 교부업체 선정 시, 보조기구 설치(필요한 경우) 및 사용법 설명 (모든 제품). 사후관리 제공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 교부 후 1년 이내에는 제품 불량 등으로 인한 교환 가능토록 업체 선정
- A/S기간을 무상 1년으로 지정하여 사용 시 수리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동 기간 내에 수리가 가능한 업체 선정
 - ※ 단, 고의로 인한 손상 시 본인 부담하여 교환 및 수리

(4) 기준금액 대비 저가 보조기구 납품 규제

- 선정 업체는 결과지에 추천된 보조기구이거나 동일사양의 보조기구 교부(보조기구센터 등 전문기관은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품질이거나 사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양의 보조기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
- 제품의 사양과 관련해 사용자의 민원이 있을 시에는 교환이 가능토록 업체 선정
- 계약 물품과 다를 경우 향후 납품 제외
- 라. 교부예정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교부
- (1)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의 안정성 및 질 높은 품질의 교부 향상을 위해 품질 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검수하여 선택
- (2) 장애인보조기구 18종 품질기준 사항
 - 최적의 보조기구 사용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18종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질 높은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운영(별지 제3호)

⑤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7.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분기별 집행계획을 포함하여 년1회 신청하며 분기별 계획에 따라 분기별 교부(별지 제4호및 제4-1호 서식).

- 나. 2014년도 장애인 장애인보조기구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는 2014년 7월 31일(6월말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2015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다. 시·도에서는 1월중에 동 지침에 의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 조사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기초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별 목표 사업량을 할당
 - 반기별 1회 이상 교부실적을 파악하여 과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배정 등 탄력적으로 관리·운영

6 행정사항

- 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나.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가 상반기에 일괄 교부되므로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며, 신청자가 많아 기한 내에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하반기에 즉시 교부됨을 알려 미교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및 중복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함
 - ※ 참고서식 2(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7 사업 활성화 관련사항

- 가. 지정된 교부품목을 교부한 후 10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하여 기타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 추진
 - 단,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타 사업의 지원품목(휠체어,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하여는 타 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나. 각 시 도는 10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시 군 구에서는 기타품목 교부 내부방침을 작성하도록 하여 교부사업 추진
- 다. 기타품목에 사용되는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예산 총액의 20% 범위 이내로 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장애인보조기구의 가격은 당해 연도의 지정 교부품목 중 최고가격을 넘지 않도록 함.
- 라. 지정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타 품목의 교부는 지정된 품목의 추가적인 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가능
- 마. 교부한 기타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명, 금액, 계약업체를 최종실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문의

○ 장애인보조기구 콜 센터

☎ 전화번호 : 1670-5529(보조기구)

◎ 안내내용 :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처 및 금액,

장애인보조기구 센터, 공적급여 신청방법 등

장애인 보조기구 업소 품목 등록제에 대한 문의

- 장애인보조기구 제품정보·상담·평가·품질관리에 대한 문의 및 기관현황
 - 중앙보조기구센터[Ⅲ 홈페이지: www.knat.go.kr]
 - 보조기구 상담 및 평가 문의

☎ 전화번호: 02-901-1953~8

• 업소 품목 등록제 문의

☎ 전화번호: 02-901-1953~8

- 광역보조기구센터
 - · 대전광역시 보조기구센터 (042-338-2980~2)
 - · 대구광역시 보조기구센터 (053-650-8340~3)
 - · 광주광역시 보조기구센터 (062-613-9365~6)
 - ·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051-790-6192~5)
 - · 경기도 보조기구센터 (070-7114-0372~3)
 - ·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043-265-0401)

🧑 장애인 보조기구 예산지원 기준

지원품목	폼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250491/01	OL#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04 33 06	350천원/인	2년
음성유도장치	12 39 09	20천원/인	2년
음성시계	22 27 12	20천원/인	2년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150천원/인	2년
진동시계	22 27 12	30천원/인	2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12 06	200천원/인	5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50천원/인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 보호대	15 09 21		
기립훈련기	04 48 08	1,500천원/인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120천원/인	2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8	800천원/인	2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30 03	800천원/인	2년
목욕의자	09 33 03	600천원/인	3년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500천원/인	3년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 · 접수대장

접수	접수	성 명	주민등록	주	소	장애 등급	소득	희망 장애인	인수	사용자시	·후관리	비고
번호	일자	0 0	번 호		-11-	등급	수준	보조기구	확인	3개월	9개월	

[별지 제2-1호 서식]

진 단 의 뢰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명 및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희망 장애인보조기구

상기인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진단을 의뢰하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를 200 . . .까지 당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원래의 장애명
- 2. 현재의 증상
-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 4.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 · 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20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의료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기준

구 분	코드번호	품질 기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 GMP ☐ FDA ☐ CE ☐ JIS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04 33 06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 CE □ 한국정보통신표준 □ 자율안전확인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12 06	□ 자율안전확인 □ KS P □ 고령친화용품 품질기준
기립훈련기	04 48 08	□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사업 품질기준
목욕의자	09 33 03	□ 고령친화용품 단체표준
녹음 및 재생장치(음성독서기)	22 18 03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22 30 08	
음성유도장치	12 39 09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5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 없음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I L W D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 보호대	15 09 21	
음성시계	22 27 12	
진동시계	22 27 12	
기타	품목고시참조	□ 상기해당 품질인증

[별지 제4호 서식]

2014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I				
사 업 종 독	<u>2</u>				
보조사업의목	적				
보조사업의내용	<u> </u>				
		보 조 사 업	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부담					
기타					
	기법 제66조 및 조금의 교부를 신		!관리에관한법	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20			
	신청자(기관	·명 및 대표자) :		(인)	
	부장관 귀형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별지 제3-1호서식) 1부

[별지 제5호 서식]

2014년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적보고

1.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2. 지원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고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목욕의자				
녹음 및 재생장치				

3. 기타품목지원내역

품목명	품목고시번호	계	남	여	가격	계약업체
Й						

[참고 제1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평가기준표2)

□ 사용자 실태

① 사용 장소	□ 가정 □ 병원 □ 학교(유치원 등) □ 시설(복지관 등) □ 기타()
② 자가 사용 정도	□ 가능 □ 불가능(주 지원자:)
③ 사용 경험	□ 있음 □ 없음
④ 교부받은 실적	□ 신규 □ 기 보급(년, 교부기관 : , 종류 :)
⑥ 소득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자 50%수준

□ 장애정보

①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②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 장애 진행 정도 및 문제점			
□ 예(진행원인 및 이유 :) □ 아니오			
<장애상태 기술>			

□ 보조기구 지원의 적정성

항목	상담내용	낮애	←	보통	\rightarrow	비
		2	4	6	8	10
교부 환경의 적정성	① 해당 보조기구의 설치 환경의 적정성					
장애상태와	② 보조기구 사용에 필요한 조작능력					
적정성	③ 장애 정도 및 상태에 따른 보조기구의 적합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④ 활용계획과 신청한 보조기구와의 적합성					
사용의 효과성	⑤ 보조기구 사용을 통한 문제해결의 정도					
총 점						

^{2) (}활용안내)교부사업 평가시 교부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2p(대상정보~종합의견)는 시**·군·구로 보내는 <u>소견서 양식으로</u> 활용

□ 대상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장애유형	ਰੋਰ	장애/	긥
주 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 신청보조기구 및 활용계획

구 분	
제 품 명	제품 가격
활용계획	신청자가 보조기구 수혜시 활용계획을 작성(주요욕구)

□ 종합의견

□ 보조기구 사용0	∥ 적합 □ 대체 보조기구 추천 □ 보조기구 사용에 부적합
종 합 의 견	
추천보조기구	제품의 모델명
보조기구정보	가격., 업체정보, 추천보조기구의 특성 등 추천보조기구의 정보를 필요한 부분만 작성

평가자 정보			
▶ 기 관 명 : ▶ 평가자명 : ▶ 평가일자 :			

■ 평가기준(안)

※ 교부품목별 제공시 확인사항

장애	보조기구	기본 확인사항
지체, 뇌병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보행 및 독립적인 체위 변환이 가능한가? - 수ㆍ전동휠체어 및 이너 등의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는가?
심장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용구	- 욕창방지용 방석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가? - 욕창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가?
	기립훈련기	- 골반, 무릎, 발목 등에 구축이 있는가? - 일부 보행이 가능한가? - 병원, 복지관 등 기립보조기구를 이용 경험이 있는가?
지체, 뇌병변	양팔 조작형 보행기 보조기구	- 스스로 일어서고, 일부 보행(물체를 잡는 등)이 가능한가? - 외출 활동이 있는가?(하루 몇 회, 시간 등) - 지팡이, 유모차, 보행기 사용 경험이 있는가? - 주로 이동하는 지면의 상태는 어떠한가?
701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칼포크), 젓기락및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 손 및 손목 등의 사용이 가능한가? - 물체를 잡거나 쥐는 등의 동작이 가능한가? -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일부 도움을 통해 식사가 가능한가?
	목욕의자	- 착석시 신체적 균형유지가 가능한가? - 목욕의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
	시각신호표시기	- 진동 및 빛 등을 감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없는가? -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청각	진동시계	-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없는가? - 시각적 문제는 없는가?
	헤드폰 (청취증폭기)	- 큰소리(TV, 라디오 소리 등)에는 반응을 하는가? - 보청기를 사용하는가?
	음성유도장치	- 진동 및 빛 등을 감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없는가? -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음성시계	-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1) 7L	영상 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 확대된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가? - 작은 버튼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손 기능이 원활한가? - 기기 조작이 가능한가? - 돋보기를 통해 글자를 볼 수 있는가?
시각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 촉각을 통해 물체의 위치 등을 파악 할 수 있는가? - 기기 조작이 가능한가? - 바코드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촉각을 통해 기기조작이 가능한가?데이지(DAISY) 플레이어 주요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참고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 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복e음 등 공공기관 교부사업 시스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 인정보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중복조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교부받은 품목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ㅁ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년 월 일

성 명: (인)

시・군・구청장 귀하

[참고 제3호 서식]

(앞쪽)

등록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제조업 신고 확인증

- 1. 업소의 명칭:
- 2. 소 재 지:
- 3.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 . . .)
- 4. 의지•보조기 기사 수:

귀하가「장애인복지법」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

(뒤쪽)

1. 변경사항						
번 호	연 월 일	변 경 내 용	기재자 성명(인)			
2. 행정처분 사항						
처분연월일	큰 거	처 분 내 용	기재자 성명(인)			

[참고 제4호 품목]

지원품목	기능	품목	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좌석면의 욕창 방지	00000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04 33 06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등받이면의 욕창 방지		
음성유도장치 12 39 09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킴		9.0
음성시계 22 27 12	버튼을 눌러 시간을 청각신호로 나타냄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청각신호를 시각적신호(빛, 진동)로 변환하여 표시	I	
진동시계 22 <i>2</i> 7 12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Jann.	2

지원품목	기능	품목	품목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12 06	체간 균형능력이 저하 된 경우 보행 훈련용 혹은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를 도모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D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독립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가능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접시 및 그릇 15 09 18	한손으로 음식을 모으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홈이파져있어 음식담기가 편리함		
음식 보호대 15 09 21	수저에 음식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지원품목	기능	품목	품목	
기립훈련기 04 48 08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 완화		A STATE OF THE PARTY OF THE PAR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청취	O Carlo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8	시각정보를 확대 할 수 있는 보조기구	See and Read	th sortal to me one and one the one proceedings of one standard standard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30 03, 22 30 09, 22 39 1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			
목욕의자 09 33 03	신체적 균형능력 저하 및 기립자세유지의 제한으로 인해 앉아서 목욕하는 것을 지원	PA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 3-6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및 목적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③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한 여성 장애인
 - 특히,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우선 지원

4 사업 추진 기본방향

-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 특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특히, 지역사회 내 자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기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행가능성 및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지향

5 사업수행기관

가. 사행수행기관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 ※ 단,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한 친목단체는 제외

나. 사업수행기관 선정

-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 2개 이상 복수 선정 원칙
- 선정방법
 - (공모 및 신청 접수) 공모를 실시하여, 예산 규모 10백만원 이상으로 최소 2곳 이상 신청 접수
 - * 선정기간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도에서 결정
 - (사업심사위원회 구성) 내·외부 심사위원 최소 5인 이상 구성 (외부 위원 30% 이상으로 구성)
 - (평가실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 선정 기준에 대한 지원 신청기관의 직접 발표 또는 서면 심사를 통해 평가 실시
 - (기관 선정) 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상위 득점기관을 선정 및 추천
 - * 단, 여성가족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등 타부처 유사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선정에서 제외
 - * <u>시·도별 생활권역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자</u> 분포 및 교육수요 등을 반영하여 균형있게 선정

6 사업내용

○ 각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의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 시, 총 4개 세부사업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운영

사업 구분	사업 내용	프로그램명(예시)
기초학습교육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한글, 영어, 정보화 교육 검정고시 지원
인문 교육 자아정체성 확립 및 인식 개선 역사, 철학, 역		역사, 철학, 일반 예술
사회 및 체험 교육	직접 체험 등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 및 직업 능력 등 향상	지역사회 탐방, 타인 및 사회에 대한 이해 직업 탐색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교육	성의식, 건강 및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등	성교육, 육아 및 가족관계의 이해, 건강관리

- 장애 특성 상 이동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방문형(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려
- 동일 시·도 내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 주의
- 지역 편중 방지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교육 기관 및 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려

7 사업 운영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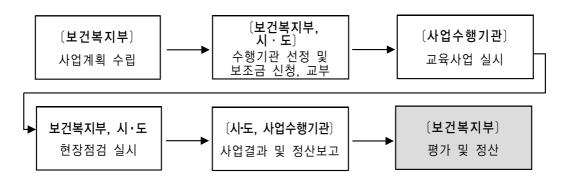
- 본 사업은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됨
- 사업지원 예산 항목
 -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 강사비, 교재 구입비 등
 - 교육 수강생 관리를 위한 운영비
 - 홍보비, 컴퓨터 등 학습실 및 기자재 임대료, 이동지원비 등
 - 사무용품, 우편료, 소모품비 등 기타 운영비 등

- 사업 수행기관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국비80%, 지방비20%)을 집행하므로 사업수행기관의 일반적인 관리운영체계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수입 및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자료 작성
 - *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회계 처리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80%, 지방비 20%로 하되, 자부담 추가 가능

8 사업평가

- (목적) 사업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 하여.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해 국고 예산 배분 시 기준자료로 활용
- (평가 내용) 사업안내 지침 준수 여부, 프로그램 구성, 이용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 실시
- (평가 시기 및 방법) 매 년도말 기준 실적보고서 제출 및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등을 통한 평가 실시

어업수행체계



[별지 제1호서식]

()년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신청서

	시도 명								
I. 현	제출부서								
	담당자명/ 연락처/이메일/ FAX								
황	1. 일반현황(13.12	·.31. 현재)						
	등록 장애인수		명 여성장애인 수, %		<u>l</u> 수, %	(,	%)		
	2. 운영주체 유형 및 지원								
Ι.	교육사업 사업수행 기관	①(기관명) /(사업명1) (사업명2) (사업명3) ※ 법인 또는 단체 유형 표기하고 법인 또는 단체명을 정확히 기재							
		2							
사 업	및	3							
- 입 - 계	사업명	4	4						
획		5							
	※ 지원희망 여성장애인 사업 수행 기관의 세부사업계획 제출								
	- 시·도가 지원 희망하는 세부사업계획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Ⅱ.	3. 예산확보 및 사용계획 (단위: 천원)								
ᇳ. 예	구 분		국비(80%)	필수:	지방비(20%)	기타추기		합 계	
산 계	예 산(백만원	<u>!</u>)							
획 국비 신청액 백만원									
위와 같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각 시도 및 법인단체의 특성에 맞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분량은 1개소당 10p 이내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기관 현황

	(우편번호 -)
주 소 및	O 전화번호 : O 사업담당자 성명 : O FAX : O E-Mail :
연 락 처	O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0
단체연혁	○(예시) '81.11.8 ○○○ 창립 ○(예시) '88.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허가 등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센터회원수 :
	※ 작성예시 대표/회장
사업수행기관 조직도	문영위원회 사무국장 ?
2013 예산현황	○ 예산총액: 천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보조(%), 사업수익(%), 기타(%)
2013 주요사업 내용	0 0 0
2014 주요사업계획	0 0 0

- □ 2014년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계획
 - ㅇ 교육사업 내용/ 홍보방안 / 소요금액 등
 - ☞ 키워드 중심으로 "o". "-"는 두줄이 넘지 않도록 작성
 - ☞ 통계수치 등은 "※" 중고딕으로 가급적 1줄 처리
 - * (세부사업은 기초학습교육, 인문교육, 사회 및 체험교육, 보건 및 가족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
 - 예시) ㅇ 기초학습교육
 - 검정고시 :
 - 한글교실 :
 - ㅇ 보건 및 가족 교육
 - 자녀(아동, 청소년) 이해 :
 - 부부간 합리적 의사소통방법:
 - * 사업계획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시·도의 특성에 따라 작성하며,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할 수 있음(단, 분량은 10p 이내로 작성 요망)

- 3-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목 적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2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oxed{3}$ 지원대상 : $1\sim 3$ 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3급인 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상세 지워대상)
 - ·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 201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 2012년~2013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 대리 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6 업무처리 절차



※ 향후 시스템 구축으로 행복e음을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시스템 오픈일은 별도 통지

□ 신청·접수(읍·면·동)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 여성장애인에게 <서식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완료 후 신청을 접수함
 - 특히,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정보 확인을 위해 <서식 1> 신청서 2면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후, 개인 정보 제공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의 동의 서명 날인 요청

② 대상자 자격확인(읍·면·동)

- (등록장애정보) 행복e음을 통해 장애등록 정보 및 장애등급(1~3급) 해당 여부 확인
- (출산비용 지워대상 확인)
- · 출생사실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내용 확인을 통한 모의 정보 및 출생 신고 사실 확인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증명서 등의 내용 확인을 통한 임신기간 16주 이상 유산·사산 사실 확인

③ 결정 및 지급(시·군·구)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사업부서로 이송하여 검토 및 결정 후, e-호조를 통해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 처리
- 지급 대상자 및 집행실적 관리 및 보고

7 행정사항

- O (안내 및 홍보) 시·군·구(읍·면·동)의 출생신고 접수창구 및 사회복지 상담 창구, 장애인단체 및 의료기관(산부인과 설치·운영)에 홍보물 비치 및 담당 공무원의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누락 방지
- O (추진실적 보고) 지급 인원, 예산 집행실적 및 홍보 실적 등 사업 추진실적을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별로 취합 후 분기별 붙임 <서식 2>에 의거 보고
- O (지자체 자체 시행 사업과의 관계) 본 사업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출산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임. 따라서 지자체 자체 운영사업 중 추가비용 보전 목적 외 출산 장려목적 등을 위한 지원인 경우 가급적 사업 유지 권고

〈서식 1〉 (1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와 관계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과	주소				
동일할 경우	전화번호	_			
기재 안 함)	장애유형		장애등급		
출생아	출생(유산, 사산)일		출생순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명		
Hㅁ게커 	계좌번호				
본인은 상기	와 같이 여성장애	인 출산비용 지 20 년 월		다.	
ᄩᄈᆩᆌᆮᆡ	자 · 시장 · 군수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시시포시	시 · 시경 · 正十 ·	788 गण 			
1. 신분증 제출서류 2.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증명서 중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참고사항	-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저출하여도 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기				

없을 경우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본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ㅇ 목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전국 시·군·구 사업부서 및 읍·면·동
-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열람
 - 등록장애 정보 확인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서식 2〉 2014년도 분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실적

1.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4년 예산	해당 분기	집행실적(누계)	집행률(누계)
(A)	예산 집행실적	(B)	(C=B/A)

2. 지원 인원

(단위 : 명, %)

'14년 목표 인원 (A)	신청 인원	해당 분기 지원인원	지원인원(누계) (B)	지원율(누계) (C=B/A)

3. 기타 홍보실적(홍보 대상기관 및 인원 등 개조식 작성)

- 3-8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 근거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장구 세부사항 기준,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2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 전동륄체어·전동스쿠터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함
 -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만성질환,18세미만) 장애인은 아래 의료급여2종과 동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 2종 수급권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 ※ 전동륄체어·전동스쿠터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1종은 100%, 2종은 85%를 공단이 부담함
 -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항> 참조
 -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장 구별 급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실 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 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거나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것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단, 뇌병변 장애인은 보조기 급여 가능
- □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건강보험 지원절차

- ① 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2]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분류	보장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기타 보장구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성구 		지체・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동휠체어,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전동스쿠터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함
 - ② 신청(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처방전과 함께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제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 ③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 공단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 공단의 확인사항(「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4조)
 - 1. 장애인 등록 여부
 - 2.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3.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4.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5.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6.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7.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보장구 구입
 - 장애인은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보장구 구입
- ⑤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장애인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2]에서 규정한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 ⑥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 보장구를 구입한 후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를 제출
 - ※ 첨부서류
 - 1.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각 1부(지팡이, 흰지팡이, 목발은 제외)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3.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제조·수리업자이거나「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⑦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공단은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장구 구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
 - ※ 공단의 확인사항
 - 1.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 2.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제1호에 의한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8) 사후 점검
 - 공단은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한 후에도 급여된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보장구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에 한함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2]에서 고시한 과목의 전문의에게 받은 처방전만을 인정 Ú ○ 보장구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전동휠체어· ② 신 청 전동스쿠터만 해당) Û ○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여부결정·통보(전동 ③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휠체어 · 전동스쿠터만 해당) Û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Ú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⑤ 보장구 검수확인 검수확인서 발급 Ţ, ○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 ※첨부서류 ①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②세금계산서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③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 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 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Ú, ○ 공단은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보장구 구입여부 등을 지체 ⑦ 구입비용지급 없이 확인한 후 지급 Û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⑧ 사후점검 있는지 등을 확인

5 의료급여 지원절차

① 보장구 처방

-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으로서 신청자 거주지의 동일 시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 다만,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 소재 의료기관 처방전도 인정가능.
 - ☞ 건강보험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참고
- ②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보장구 신청은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
 - ☞ 장애인 보장구 제작·판매업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에 유의
-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수급 적격여부 판단 기준
 - 공단의 확인사항(「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4조)참고
 - 보장기관에서는 당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한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참고)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구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
 -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는 지급불가하며, 특히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보조자없이 안전하게 조작할 수 없는 중증 시각장애인 등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수급자격 여부 판단시 주의. 경증 시각장애인은 시약확보 가능하다는 안과의사 진단서 제출
 - 당해 보장구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는지, 보조인이 존재 하는지, 보장구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보장기관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장구를 신청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력정보 조회를 통해 기존에 유사 품목을 지원 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
 -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 ※ 보장기관은 기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구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중지급 방지
-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보장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사의 보장구 처방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1차 확인을 하고, 필요시에 관내에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에 대하여 재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 ④ 보장구 구입(제작·파매업자)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적합한 보장구, 제조번호 또는 제조업자(또는 수입자), 연락처 등이 표기된 보장구 판매
- ⑤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장구를 받은 경우에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검수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를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⑥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지급
 - 시행규칙 제25조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

⑦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 시에는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시행규칙 제25조제5, 6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2종 수급권자는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15%를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하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 지급일자와 담당자를 전산입력

⑧ 사후 점검

-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 지 3개월 경과시점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당해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내구연한이 지나 재지급신청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 보장구 지급후 내구연한 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 및 기타 사유로 당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중인 장애인보장구를 자진 반납 또는 기부 유도 등을 통해 시설에 제공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특히,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Į,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수급자격결정신청, 보장구처방전제출) ② 신 청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Û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 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 보장기관은 장애인보장구 급여 신청서를 반드시 민원검수 판단 등록하여 민원기한 내에 처리할 것 ※ 수급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읍-면-동에 의뢰하여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Ú,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Ú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⑤ 보장구 검수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Û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Û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 ⑦ 구입비용지급 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 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Ų,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⑧ 사후점검

6 기타사항

- 기타 보장구
 -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은행 통장사본
- 종별 변경 및 자격상실 등에 따른 처리
 - 수급권자의 종별 변경(1종→2종 또는 2종→1종)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의료급여→건강보험), 전출입의 경우에는 보장구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7 문의처

- 건강보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 의료급여: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원시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

〈건강보험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아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어깨가슴 의지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미관형	720,000	4년
	fore-quarter amputation 의 과저레기 사시되 겨오 시요	기능형	1,400,000	4년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미관형	790,000	4년
	amputation prosthesis)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기능형	1,470,000	4년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년
팔	amputation prosthesis)		기능형	1,250,000	4년
	표준 위팔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Standard above-elbow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미관형	570,000	4년	
의	amputation prosthesis)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기능형	1,250,000	4년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미관형	560,000	3년
지	amputation prosthesis)	절단된 경우 사용	기능형	1,240,000	3년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미관형	560,000	3년
	amputation prosthesis)	경우 사용	기능형	860,000	3년
	짧은 아래팔 의지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short below-elbow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미관형	450,000	3년	
	amputation prosthesis)	경우 사용	기능형	750,000	3년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미관형	450,000	3년
	amputation prosthesis)	직상근 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기능형	750,000	3년

분류	ə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용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손목관절 의지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미관형	450,000	3년
팔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상실된 경우 사용	기능형	750,000	3년
- 전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미관형	250,000	1년
의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기능형	590,000	2년
지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년
	한쪽편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 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년
다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 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년
리	넓적다리 의지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일반형	1,560,000	3년
	(above knee prosthesis)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실리콘형	2,270,000	5년
의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일반형	1,560,000	3년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실리콘형	2,270,000	5년
지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일반형	1,490,000	3년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보통의족을 포함		2,010,000	5년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일반형	1,290,000	3년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실리콘형	1,810,000	3년

분류	이 하 하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짧은 종아리 의지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일반형	860,000	3년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실리콘형	1,520,000	3년
다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일반형	740,000	3년
리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실리콘형	1,480,000	3년
의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위를 남기고	일반형	530,000	2년
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실리콘형	1,040,000	3년
	의족 (fact amountation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년
	(foot amputation prosthesis)	할의 경결된 경구 사용	실리콘형	720,000	2년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 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년
팔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사용		240,000	3년
조기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 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 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 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년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 하는 경우 사용		90,000	3년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l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년

분류	OF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년
척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년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년
上	척추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년
조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암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기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 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프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년
	콜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 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년
골 반 보 조 기	골반보조기 (pelvie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년
다리 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 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 하는 경우 사용		540,000	3년

분류	아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년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마비일 때 양측 긴다리 보조 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 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년
다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Lenox-Hill)	무릎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 회전 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년
리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년
보	짧은 다리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식)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년
圣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 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120,000	3년
7]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240,000	3년
	발목관절보조기 - 크렌자크식 (klenzark type ankle joint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320,000	3년
	발목관절 보조기 - 90°고정 (90°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140,000	3년

바 따	아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지팡이			20,000	2년
	목발(crutches)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5,000	2년
	휠체어(wheel chair)			480,000	5년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5년
	콘택트렌즈			80,000	3년
	돋보기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100,000	4년
	망원경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4년
기	의안(plastic eye)			300,000	5년
	흰지팡이			14,000	0.5년
타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40,000	5년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년
보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년
장구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 거나 불가능한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 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년
	정형외과용구두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2년
	(Orthopedic shoes)	18세 이하인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1년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년

→ 3-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1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6호」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 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나.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적용시기 : 장애인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적용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성별·연령에 상관없이 1~4구간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하므로 일반인보다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됩니다.
 -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나.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장애인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적용

가. 경감내용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나. 경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고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다. 경감기준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상이자는 3~5급)인 경우 2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상이자는 6~7급)인 경우 10% 경감 ☞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라. 경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국가유공자

중상이자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장애인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적용

마. 문의처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01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발 행 일 : 2014년 1월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F A X: 044-202-3960